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매뉴얼

2008. 12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림수산식품부

“돈 버는 농어업·살맛나는 농어촌”

목 차

[제1편] 우수농산물인증제도	1
Ⅰ. 우수농산물인증(GAP)개요	3
Ⅱ. 우수농산물인증 방법 및 절차	5
Ⅲ. 관련서식 및 토양·수질 기준 등	18
[제2편]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33
Ⅰ. 개 요	35
Ⅱ.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기준	38
Ⅲ.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업무 추진요령	39
Ⅳ.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사후관리	43
Ⅴ. 참고자료	45
[제3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83
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개요	85
Ⅱ.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업무추진 요령	87
Ⅲ.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예)	98
Ⅳ.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103
Ⅴ. 질의 응답	115
□ 참고자료	121
1. 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23
2.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제2008-85, 86호)	186
3. 농관원 고시(제2006-3,4호)	195
4. 농촌진흥청 고시(제2008-23호)	252
5. 분석성적서 인정기관 지정 및 업무처리 지침	263
6. 행정처분 절차도	270
7. 인증기관 현황표	273

제 1 편 우수농산물인증제도

차 례

I.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개요

1. 정의 및 목적
2. 해외동향

II. GAP농산물인증 방법 및 절차

1. GAP인증요약
2. 인증신청
3. 인증심사
4.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8-23호)
5. 심사결과 판정
6. 인증서 교부
7. 인증표시
8. 유효기간 연장
9. 인증사항 변경
10. 인증농가 교육
11. 사후관리

III. 관련서식 및 토양·수질기준 등

I.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제도 개요

1. 정의 및 목적

- 정의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
- 도입목적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85,86호), 농관원 고시(제2006-3호), 농진청 고시 제2008-23호

2. 해외동향

- Codex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1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
- FAO
 - UN산하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기존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 최근('03.4)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
 - ※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은 동구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일반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al Policy)제정을 통해 향후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

<EUREP :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 ◆ EU 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신선과일·채소류 생산기준인 GAP를 개발하고, 국제적 인증기관으로 추진 중
- 2001년 GAP인증 등 관리를 위하여 FoodPLUS 설립
 - ※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아 주요 수출국에서 EUREP의 GAP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중
- ☞ 생산자조직과 유통업체간 계약시 GAP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등으로 제재

○ 아시아(중국 등)

-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GAP를 도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후진적 농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

<중국의 관리체계>

- ◆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기준을 설정, 농산품질안전 중심이 무공해농산품(GAP) 인증 담당
- ◆ 성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국가에서 총괄하는 인증체계로 전체 농산품에 대한 GAP실행과 실행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

○ 미주지역(캐나다, 미국 등)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서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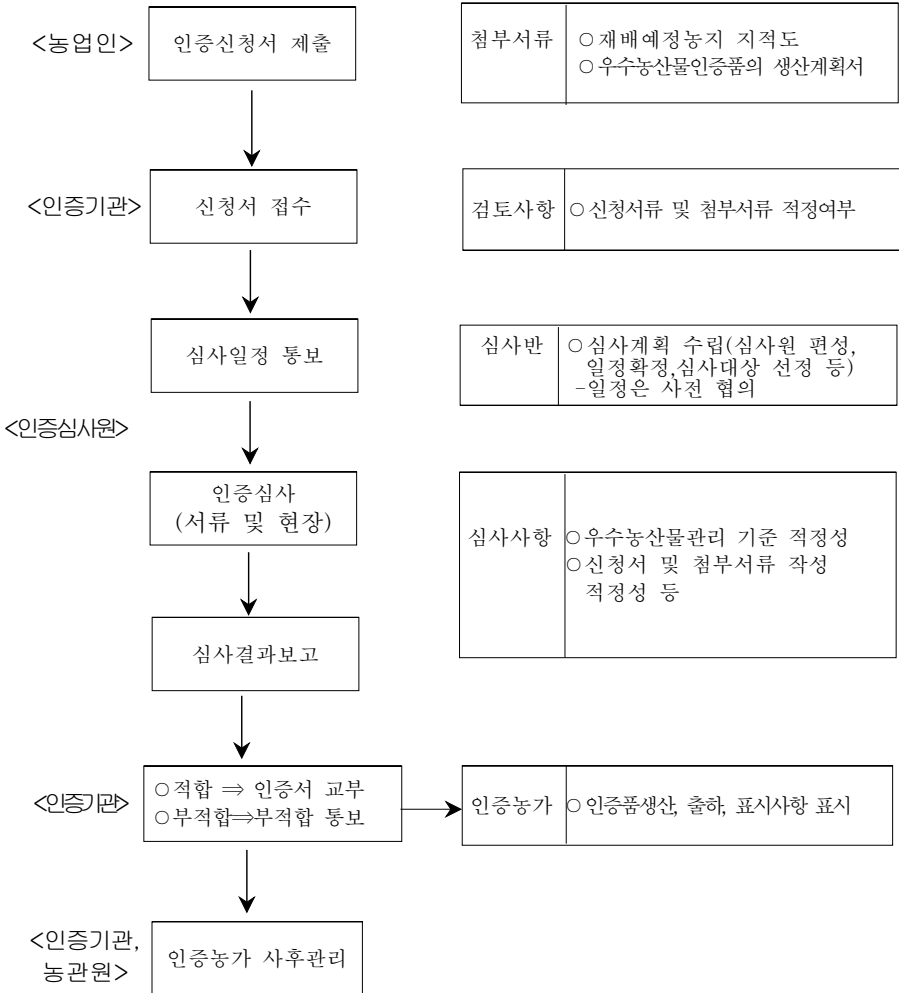
- ◆ 식품의약청(FDA) GAP 실행규범 마련
- ◆ 농무성(USDA)규범실행
 -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 GAP/GHP농산물 표시, 관리 주체로 주정부소속
 - ※ FSIS는 USDA 산하기관인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와 다른기관임
 -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II. 우수농산물인증 방법 및 절차

1. GAP인증요약

-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민간인증기관
- 인증기간 :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8-23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 대상품목 : 총 105품목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85호)
 - 식량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4), 버섯(10), 채소(30), 과수·수실(17)
-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줌. 다만,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을 해줄 수 있음

우수농산물 인증 및 관리절차



2. 인증신청

-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를 민간인증 기관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규칙 제15조의2)
-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식 :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규칙 제4의2호 서식)
- 첨부서류 : 지적도 및 생산계획서
 -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시·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 2> 인증품생산계획서 작성요령 : 농관원고시 제2006-3호 별지 제1호 서식
 - 인증신청자별(생산단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증신청 품목은 당해 작기 동안 신청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전체 품목을 기록
 - 품목별 재배면적 : 실제 재배하는 면적(지적보다 많을 수 있음)
 - 품목별 생산계획량 : 실제 재배하는 전체품목과 생산계획량을 기록
 - 재배작기 : 당해포장에서 실제로 재배되는 기간을 명기
 - 토양관리계획 : 인증품생산을 위하여 당해포장에 투입되는 모든 유기물의 종류, 투입물량, 투입방법, 자가제조외의 경우 제조방법, 투입 후 효과,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비관리계획 등
 - 비배관리계획 : 재배하는 품목별 시비관리(기비, 추비, 엽면시비 등)
 -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 예상되는 병충해에 대한 방제대책으로 농약안전사용계획 및 잡초 방제대책
 - 수확 후 처리계획 : 당해 농산물을 수확을 한 후에 어느 APC 또는 RPC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의 계획
 -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 계획 : 등록여부 또는 등록계획과 출하처(APC-RPC 또는 판매예정지 등)를 기재하되, 영농일지 등의 기재계획을 표시
 - 필지별 재배내역 : 농가별로 재배포장 소재지, 면적, 생산계획을 기재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과 심사원 출장비
 - * 출장비 : 1인 1일과 왕래기간 소요일수를 포함하되, 여비는 5급 공무원 여비 기준임
- 수수료 납부방법
 - 인증기관은 현금 또는 지로 등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각종검사비용 : 당해 인증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분석기관이 정한 수수료에 따르되, 신청인이 위탁기관에 직접납입
- 처리기한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간(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 통보
 -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심사일자 및 기간 등

3. 인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인증품 생산계획서의 기록,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및 적정여부
 - 서류심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심사시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 현장심사 : 신청인 면담, 농장여건, 인증신청포장별 주위 환경, 비옥도, 생육중인 작물의 상태, 영농기록의 기록사항과 농장의 일치여부, 종자 및 종묘, 재배포장 및 재배방법, 비배관리, 용수,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용재재, 관행재배 유무, 관행 재배 시 위험물질사용량 및 생산물 등
-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조사·분석 요령
 - 토양·수질검사는 4년 1회 이상 검사(최근 4년 이내 검사서 인정)
 - 생산물 등 : 인증심사 시 인증품이 출하되고 있는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인증품은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농장심사시 농약 등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육중인 작물체를 채취하여 확인 가능. 이 경우 심사를 위한 시료의 분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시료채취 :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시료채취방법은 농산물안전성 조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름
- 심사 면제
 - 전부면제 : 기존에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계획을 축소한 경우
 - ※영농규모가 축소된 경우 당초와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심사 실시
 - 일부면제 :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주변의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포장에 대하여는 용수 및 토양중금속을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농장주변의 여건변화가 전혀 없을 때는 용수 및 토양(중금속)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 심사방법
 -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가능. 표본심사 시 구성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 표본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 최소한 농관원 고시 제2006-3호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위한 표본추출인원수 이상을 심사

조직원수(인)	10이하	11~30	31~60	61~100	101이상
심사대상(인)	3 이상	6 이상	9 이상	12 이상	10%(최저15호 이상)

- 우수농산물기준에서 규정한 사항별로 심사

4. 우수농산물관리인증기준(농진청 고시 제2008-23호)

- 필수기준 : 27항목
- 권장기준 : 25항목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실시
- 종자 및 묘목의 선정
- 재배전 토양관리
- 비료 및 양분관리
- 물관리
-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 잔류농약 분석 등
 - 농약의 보관 및 관리
- 농기구 관리
-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 수확 후 관리시설
-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환경문제
- 교육

5. 심사결과 판정


- 판정기준
 - 위원회 : 인증기관의 의결기구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의결되어야 함
 - 적합여부 판정 : 인증여부는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판정
- 조직원의 부적격자 발생시 처리(기준설정)
 - 조직으로 신청한 경우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농관원 고시 제2006-3호 별표 1참고)
- 부적합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6. 인증서 교부

- 인증번호 부여 : 농관원에서 규정한 일련 번호 사용
 - 000(기관지정번호)-00(시·도번호)-00(시·군번호)-0000(시·군일련번호)
- * 농관원 고시 “별표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참조
- 인증서 교부시 “인증서교부대장”(농관원 고시 제2006-3호, 제4호서식)에 등재
- 인증서 : 규칙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규정된 서식사용(변경불가)
- 승인사항 중 조직의 경우 별지로 인증조직원의 성명, 주소, 면적, 인증품생산계획량 등을 첨부할 수 있음

7. 인증표시

- 인증의 표시는 도형과 문자로 표시하되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규정을 준수

 우수농산물인증 인증기관: 인증번호: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농산물인증품입니다.		
구 분	기 재 내 용		
산지(시도·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등 급	
생산자(작목반명)	성 명		
	주소(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 표시방법
 -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 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의 심벌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표시내용

- 로고 : 로고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로고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음
-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사도명 또는 사군구명 “원산지표시규정”에 의하여 기재
-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
- 종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종량 또는 개수
-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 생산자(작목반명) : 생산자 또는 작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8.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시행규칙 제4의4호 서식)
 - 처리기간 : 접수 후 20일 이내
 - 절차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을 승인
 - 연장기간 : 품목군별로 농관원 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름

- 일반농산물 : 재배기간+유통기간1년
- 건조농산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2년
- 인삼류 : 재배기간 + 유통기간 10년(수삼은 1년)
- 약용작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5년
- 판정 :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장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경우는 부적합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1년)이 지나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 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

9. 인증사항 변경

- 인증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중 인증품 생산계획 및 영농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품생산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인증변경신청서 : 농관원 고시 제2호 서식
 - 심사 : 증가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고, 축소된 경우는 심사 생략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10. 인증농가 교육

-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여부
 -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가가 소재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
- 교육내용 :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재배관리 등

11. 사후관리

가. 생산과정조사

- 조사횟수 : 반기 1회

○ 조사기관 : 민간인증기관

※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농관원 출장 소장이 실시

○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하여 조사가능

○ 조사항목

-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 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품의 피해 발생 유무

·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생산물, 작물체,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 수확·저장·보관·가공·포장·출하단계

· 재배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수확 후 관리시설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근거자료를 첨부보고

※ 특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고하여야 함

나. 시판품조사

○ 조사회수 : 반기 1회 이상

○ 조사기관 :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은 자가 인증품에 대해서만 실시)

○ 조사 사항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다. 안전성조사

- 인증기관 및 농관원(출장소)은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때
- 조사원 판단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할 경우 시료채취 분석의뢰
 - ※ 조사원은 시료채취시 인증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해당사자(인증자)가 입회하고 채취시료에 함께 봉인하여야 함
- 의뢰처 : 인증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증자가 별도로 희망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라. 조사결과 증거서류 확보

- 조사원이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 조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라. 위반자처리

- 행정처분 대상 : 위반사실을 출장소장에게 통보
 -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농관원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기준(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회신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인증기준 위반의 원인이 인증자 및 그 관련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인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처분하여야 함
 - 조직의 경우 조직원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조직까지 연대처벌
 - ※ 조직의 연대 처분시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단계 낮게 처분

《우수농산물 인증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 처 분 대 상	해 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 고발대상

- 법 제35조 위반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 법 제36조 위반 : 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Ⅲ. 관련 서식 및 토양·수질기준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작성 예시>

(앞 쪽)

우 수 농 산 물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홍길동 (우수작목반)	조직원 수	5명
	대표자 성명	최우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50101-1234567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전화번호	(031)446-5595
생산계획	품 목(품종)	재배면적(m ²)	생산계획량 (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명
	사과 (국량)	26,500	45	우수농산물관리시설
	“ (후지)	29,750	50	”
	합계	56,250	95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년 12 월 28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우수작목반 대표 최우수 (서명 또는 날인)</p> <p>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1부. 2.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p>「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4서식]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예시>

(앞 쪽)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홍길동 (우수작목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50101-1234567
	대표자 성명	최우수	직원 수	5명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433-2	전화번호	031) 446-5595
생산계획	품 목(품종)	재배면적(m ²)	생산계획량 (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명
	사과(국광)	26,500	45	00 APB
	사과(후지)	29,750	50	"
	합계	56,250	95	
인증번호		001-1004-0001		
유효기간연장기간		2008. 3. 31~9. 30(6개월)		
유효기간연장사유		축하기간 연장(사과 축하기 종료되지 않음)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년 3 월 28 일</p> <p>신청인 우수 작목반 대표 최우수 (서명 또는 날인)</p> <p>인증기관의 장 귀하</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우수농산물인증품생산계획서(예시)

1. 신청인 : 우수 작목반 반장 최우수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계획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	비 고
사과(국광)	26,500 <small>m²</small>	35.2 <small>톤</small>	2농가
사과(후지)	29,750	41.7	3농가
합계	56,250	76.9	5농가

3.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품목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사과(국광)											수확	저장
사과(후지)											수확	저장

※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 토양기본 관리: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토양지표면 관리: 사과나무 밑에는 호미를 초생재배하여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유기물 함량도 보충한다(파종시기, 깎는 시기, 파종양 등)

- 토양은 00농업기술센터에 2년 주기(7월하순~8월 상순경)로 정기적으로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객토, 정지작업으로 토양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도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에 따라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고 과다한 성분은 사용을 자제한다
-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농업용수 이상 되는 용수를 사용하여 1~2일 간격으로 전적 관수하거나 1주일에 1~2회 3~5시간 정도 스프링클러를 이용 상포한다.
- 관수와 배수는 토양 수분함량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특히 우기에는 배수에, 건조기에는 관수를 적절히 한다.

5. 비배관리계획

- 기비(떨거늪)은 전년 낙엽후부터 땅이 얼기전 또는 이듬해 해빙후에 시비한다(유기물 또는 화학비료, 미량요소 등의 시비시기와 시비량 등 기재)
 - * 밭훈토비등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 사용량 등과 등
- 추비(떨거늪)은 5월~6월과 장마이후 시비한다(화학비료, 미량요소 등의 시비시기와 시비량 등 기재)
- 관비(관수시 떨거늪): (화학비료, 미량요소 등의 시비시기와 횟수, 시비량 등 기재)
- 엽면시비: 화학비료, 미량요소 등의 농도, 제조방법, 시비시기와 횟수, 시비량 등 기재
- 토양개량제 등 사용계획, 제조방법, 시비시기와 횟수, 시비량 등
- 시비량은 토양분석의 시비처방서에 따라 시비하되 시비처방서가 없을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이 권장하는 다음의 표준시비량(성분함량기준)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적절한 시비량을 산출하여 시비하되 무농약재배의 경우는 1/3량을 저농약재배의 경우는 1/2량을 사용한다.

[참고] 사과의 표준시비량(10a당) <출처:농촌진흥청>

단위:kg

구분	수령	기비			추비			계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비옥지	1~4년	1.2	1	0.6	0.8	0	0.4	2	1	1
	5~9년	1.2	1	1.2	0.8	0	0.8	2	1	2
	10~14년	3	2	1.8	2	0	1.2	5	2	3
	15~19년	6	5	4.8	4	0	3.2	10	5	8
	20년이상	9	8	7.2	6	0	4.8	15	8	12
척박지	1~4년	1.2	1	0.6	0.8	0	0.4	2	1	1
	5~9년	2.4	2	1.8	1.6	0	1.2	4	2	3
	10~14년	4.8	5	3	3.2	0	2	8	5	5
	15~19년	9	8	7.2	6	0	4.8	15	8	12
	20년이상	12	12	12	8	0	8	20	12	20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병충해타 창조방제는 농약, 제초제 등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예방 위주 방제 대책을 실천 기숙하고 병충해 등 발생시 방제방법 사용약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숙한다

○ 병해 방제

- 기상과 토양적 조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재배지 선정과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여 예방하는 방법, 중간기주 제거, 이병부위 제거 방법
- * 검무디씩윽병, 탄저병, 전무디낙엽병, 갈색무디병, 등녹 방제 등에 대한 예방법, 발생시 처리 방법, 약제사용시 약제명, 희석농도, 사용시기, 살포량 등 기숙
- 봉지씩우기, 적엽, 사과동리기, 반사평흙깎기, 생장조절제 사용등 시기

○ 충해 방제

- 해충(신식나방류, 잎말이나방류, 굴나방류, 나무좀, 응애, 진딧물류) 등 예방법, 예찰법, 익충류, 천적 등 은신처 제공, 천적 살포 등 예방적 방법 활용 방법
- 농약을 이용한 구제방법: 약제명, 사용시기, 농도, 횟수, 사용량 등

○ 잡초 방제

- 과수원 지표면 잡초관리
- 과수원 주변 잡초 관리
- 제초제를 이용한 잡초방제 : 약제명, 사용시기, 농도, 횟수, 사용량 등
- 기타 잡초 방제 방법을 기술

7. 수확 후 처리계획

- 수확시기, 수확방법, 후숙관리, 예냉, 저장온습도관리
- 수확후 운송, 저장, 선별, 세척, 포장방법
- 제품 포장 및 운송계획 등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 계획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신청서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농관원에 등록토록하고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력추적관리등록번호를 포장재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 운송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7.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품목명	재배포장			생산 계획량	비 고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면적		
안양6동433-2	최우수	사과(국랑)	관양동	123	20,000	m ² 톤 28.0	10a당 1,400kg
안양6동532-3	000	“	”	125	6,500	7.2	”
안양6동532-9	000	(후지)	”	128	10,000	14.0	”
안양6동532-10	000	“	”	129	10,000	14.0	”
안양6동532-11	000	“	”	130	9,750	13.7	”
계					56,250	76.9	

우수농산물관리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예시)						
신청인	단체명	우수 작목반		조직원 수	5명	
	성명	최우수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67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전화번호	031)446-5595	
생산계획	품목	사과(후지, 국광) 포도(켄벤티리)	생산기간	'08.4.1 ~'08.10.30	출하기간	'08.10.1 ~'09.6.30
	재배면적	60,000 m ²		생산계획량	85.9 톤	
	포장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23번 6필지				
인증번호		001-1004-0001				
변경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당초 2품목에서 변경 3품목으로, ○ 재배면적 당초 56,250 m²에서 변경 60,000m²으로 ○ 생산계획량 85.9톤으로 변경 : (포도) 6톤 추가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규모 및 생산계획량 증가 농가별 사유 : 최우수 농가의 품목 및 생산계획량 추가 				
<p>상기와 같이 인증품 생산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08년 5 월 28 일</p> <p style="margin-top: 20px;">신청인 우수 작목반 대표 최우수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인증기관의 장 귀하</p>						
<p>첨부 :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추가품목 포도에 대한 인증품생산계획서를 사과 예시와 같이 작성)</p>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아래와 같다.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관련)

(단위 : mg/kg)

물질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구리	50	200
비소	6	20
수은	4	16
납	100	400
6가크롬	4	12
아연	300	800
니켈	40	160
불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시안	2	120
페놀	4	20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8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24

비 고 :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수질기준

가. 하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2항 (동)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의 규정에 의한 3. 수질 및 수생태계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부유 물질량 (mg/L)	용존 산소량 (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	-

비 고 :

1.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3.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 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역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4.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5.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6.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7.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나. 호소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 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 소 (T-N) (mg/L)	클로로 필-a (Chl-a) (mg/m ³)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 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

※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지하수 수질기준

(지하수법 제20조 2항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

(단위 : mg/l)

항 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일 반 오염물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대장균군수	5,000 이하 (MPN/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일반세균	1ml당 100CFU 이하	-	-
특 정 유해물질 (15개)	카 드 용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 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 안	불검출	불검출	0.2 이하
	수 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기 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 뇨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 젨	0.015 이하	-	-
	톨 루 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 실 렌	0.75 이하	-	-

비 고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라. 먹는물 수질기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1항)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표준한천 배지내에서 성장하여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온성 균을 말한다)은 1㎖중 12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 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대장균군(젓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그람음성, 무포아성 간균으로 또는 통성혐기 성균을 말한다)은 50m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ml)에서 아니할 것
- 다.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 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 마.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세레늄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6가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 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말라티온은 0.2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페니트로티온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더.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가.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 아. 아연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증발잔류물은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 탁도는 (INTU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제 2 편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차 례

I. 개 요

1. 추진배경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관련 근거법령

II.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기준

III.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업무 추진요령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 및 신청서 작성 요령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심사 및 지정서 교부

IV.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사후관리

V. 참고자료

-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절차
-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 해설
- 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심사평가표 작성예시
-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

I. 개 요

1. 추진배경

- GAP인증품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농산물 생산체계와는 다르게 생산·관리를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농관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지정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관련 근거법령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제7조의3)
 -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 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제15조의5)

①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6)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6와 같다.

[별표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15조의8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지사만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지사만을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2호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 취소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다.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 취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II.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기준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규칙 제15조의5제2항 별표 3의3)

①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우수농산물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2인 이상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자세, 우수농산물관리관련법령,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② 시설

-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미비한 사항은 1년 이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항목별 내역과 지정기준에 대한 해설은 붙임 참조

③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규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 방법 마련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 보완 추진

다.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 교육

바. 그밖에 원장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관리시설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Ⅲ.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업무 추진요령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 및 신청서작성 요령

가. 신청서 제출

○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규칙 제15조의5제1항 및 농관원 고시 제2006-3호 제13조)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100천원(정부수입인지)

○ 민원처리기한 및 처리기관 : 42일간(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농관원 지원

○ 신청서 접수처 :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

- * 출장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지원장에게 신청서류를 송부하되,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민원 사무처리규정에 따름

나. 신청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I. 신청자 개요

1. 목적 : 기관 및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목적
2. 신청자 현황
가. 일반현황 / 나. 사무실현황 / 다. 전체 직원현황
3. 조직도

II. 업무담당 조직 및 인력

1. 조직 / 2. 인력

III. 시설·장비현황

1. 시설현황 / 2. 장비현황

IV. 업무규정

1. 관리시설 운용대상 지역 / 2. 관리시설 이용품목 및 범위
3. 시설·장비 운영계획
4. 근무자 준수사항, 교육 및 자체 관리·감독계획
5. 인증품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계획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
가. 이력추적관리계획 / 나.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7. 사후관리
가. 생산·출하과정조사 / 나. 시판품조사 / 다. 위반시 처분절차

V. 서류 비치·보존

1. 시설물 관리대상 / 2. 농산물 입출고 관리대장

VI. 부록

1. 별표 / 2. 별지 서식 / 3. 기타 시설관련 운용규정 / 4. 관련증거 서류

지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 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전산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관리시설의 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관리시설의 조직, 주요 품목별 사업계획
 - 기타 관련 문서·대장 등 증거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 ③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직제표 등 조직관련 증거서류
 - 인력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재직증명서 등 증거서류
 -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개요 등 증거서류
 - 관리시설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 직원관리계획(교육, 준수사항, 임무 및 관리감독규정)
 - 주요 품목별 수확 후 처리방법
 -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문서 보관관리 등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심사 및 지정서 교부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심사

- 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소속직원을 관리시설 지정심사원(이하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 관리시설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농관원 고시 제14조제1항)

-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이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관리시설의 지정기준(규칙 제15조의5제2항)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
-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은 규칙 제15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지정 심사를 완료한 후 농관원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사평가표 첨부 양식을 참조

나. 심사결과 판정 및 지정서 교부

- 지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규칙 제15조의5제2항의 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적합으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4의6호 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
-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서 접수 및 지정서교부대장 붙임 참조

다. 관리시설 지정번호 부여

- 관리시설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 부여하는 관리시설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농관원 고시 별표 5와 같다.

※ 시도·시군번호(0000)-지원별 일련번호(000)

라. 관리시설 지정사실 보고(통보)

- 지원장은 관리시설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장 및 지정받은 관리시설을 관할하는 출장소장, 관계 인증기관의 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통보)한다.

IV.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사후관리

- 농관원 출장소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농관원 출장소장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관리 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조사공무원은 관리시설의 조사결과를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 보고를 받은 출장소장은 관리시설이 규칙 제15조의6의 지정취소 및 사업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당해 관리시설을 지정한 지원장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취소는 청문절차를, 정지처분 등은 처분예정통지서 발부 등
-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장 및 당해 출장소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 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규칙 제15조의6 별표3의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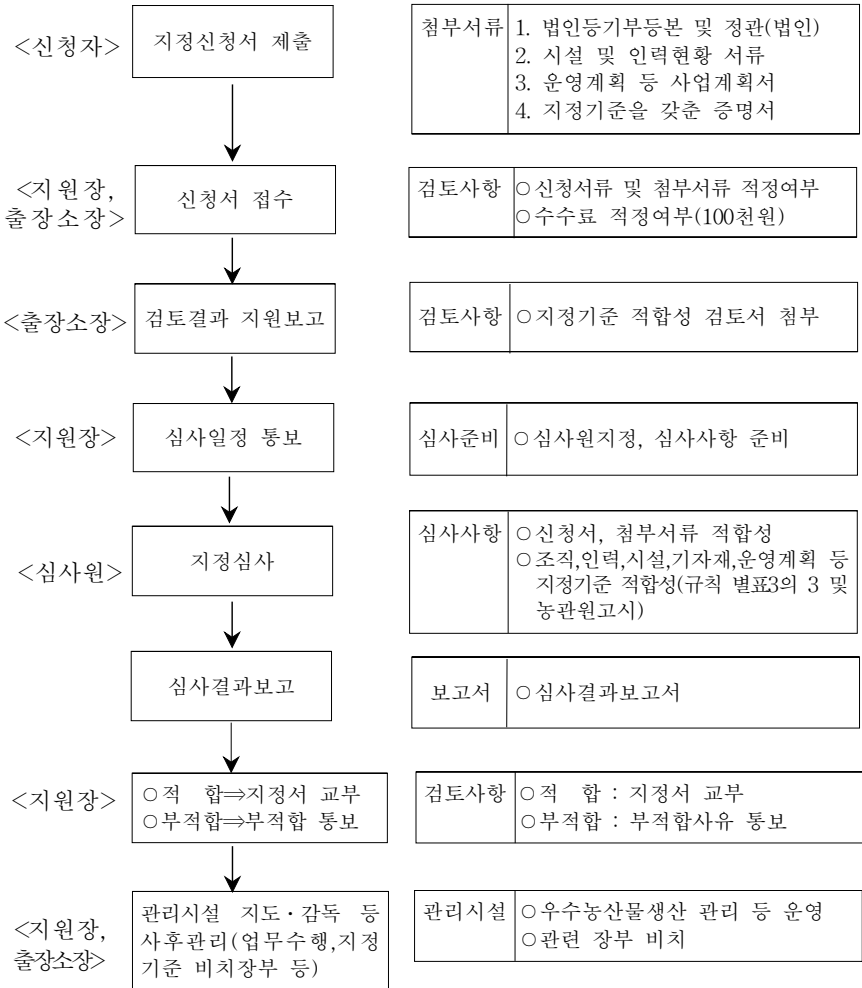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p>가. 법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p> <p>(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p> <p>(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p>	법제7조의3 제4항제2호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지정취소
<p>나.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p> <p>(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p> <p>(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관리할 경우</p>	법제7조의3 제4항제3호	경고	사업정지 3월	지정 취소
		사업정지 3월	지정취소	

V. 참고자료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절차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 해석

(1) 대상 농산물의 세척, 비세척 농산물인지 결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적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GAP 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세척, 비세척 농산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에는 비세척, 세척 농산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항목의 차이를 두고 있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에서 농산물을 크게 비세척, 세척 농산물로 구분하여 있지만, 표 1과 같이 비세척, 단순세정, 세척 농산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는 비세척, 단순세정, 세척 농산물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의 적용 방안을 명시한 것이다.

표 1. 비세척, 단순세정, 세척 농산물 구분

구분	내용	예시
비세척 농산물	모든 공정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단순세정 농산물	전처리공정으로 농산물의 이물질 제거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물로서 단순 세정하는 농산물 - 포장지에 세척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	- 단순세정한 감귤 - 단순세정한 당근
세척 농산물	세척공정을 거쳐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 - 포장지에 세척농산물로 표기된 제품	- 안심사과 - 씻어나온 포도 - 샐러드 등 신선편이 농산물

표 2. 비세척, 단순세정, 세척 농산물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적용

구분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비세척 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의 비세척 기준을 적용함
단순세정 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의 세척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함 예) 단순 세정 감귤인 경우 25항의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세척 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의 세척 기준을 적용함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항목별 점검내용

- ①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주변에 화학공장, 제철소 등 공기오염물질과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시설과는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2	작업장은 위생매립지, 소각장, 쓰레기 야적장 등은 설치류와 해충을 불러들이므로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권장

- ②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작업장내의 커피, 차 등의 편이시설 공간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해주어야 한다.	필수
2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단 세척공정이 다른 공정과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의 경우 전체 시스템의 작업공간이 다른 작업과 구획되어야 한다.	필수
3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획을 실시하도록 한다.	권장

<참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청정도 구분

청정도구분		대 상	대상이 되는 주요 공정
구분	작업구역		
비오염지역	청결작업구역	청결 작업실	세척, 포장
	준청결작업구역	청결 작업구역에 준한 구역	세정, 선별
오염 지역	일반작업구역	오염을 관리해야 하는 구역	원료반입, 보관, 전처리 외포장, 자재보관

③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필수
2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필수
3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세척농산물은 필수)	권장
4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은 필수)	권장
5	바닥은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수성 ㉡ 항균성 ㉢ 내부식성 등	권장

<참조> 바닥 마감재질 종류 및 특성

종 류	장 점	단 점
에폭시	내습성 우수 고른 면처리로 표면이 미려함 습기에 의한 변질 염려가 적음	경질특성상 흠집발생 가능 표면이 미끄러우므로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시공해야 함
우레탄	연질로서 표면이 부드러움 내 마모성 우수 열 절연성 및 내약품성 우수	충격에 의한 표면손상에 약함
하드너	시공이 간편 시공기간 짧음 비용이 저렴함	바닥 마모가 빠름 재시공으로 투자비 증가
MMA 수지	속경화성 우수 : 시공 후 2~4시간 후 보행가능 저온경화성, 공사기간이 짧다 내마모성, 내충격성 우수 유기/무기산에 강함	알콜에 약함 내열수성이 약함

④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배수로는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적절한 모양과 폭으로 구배를 갖춘 구조 및 설비여야 한다.	필수
2	배수구는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필수
3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해야 하며, 세정, 소독이 가능한 설비여야 한다. 단, 단순 세정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필수
4	배수구는 외부의 악취 및 폐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권장

<참조> 배수로 종류 및 특성

종 류	장 점	단 점
사각형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 적합 배수가 원활함	청소성이 용이하지 못함 미생물 번식 가능성 높음 열수축성에 의한 균열발생 가능
U자형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 적합 배수가 원활함 청소성 및 위생성 우수함 물 사용량이 적은 지역 적합	고가이며, 누수 시 이물질 발생우려
오메가형	청결하며, 청소가 용이함 커버가 없어 미생물 번식 및 해충 번식지 제거 가능	고가이며, 누수 시 이물질 제거 어려움 전용 청소기구에 의해 청소됨 보이지 않는 부분의 미생물 발생 우려 있음
슬릿형	뚜껑이 필요 없는 스텐레스제 청소성, 물리적 충격성 우수 슬릿부분을 통해 배수관내를 직접 육안확인 가능 탈착식 트랩으로 세정이 쉬움	절곡성형으로 설치 시 고비용 소요

- 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내벽은 견고하고 평활해야 한다. 판벌의 경우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잘 접합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2	세척실 내벽은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필수
3	세척실 내벽은 밝은 색이어야 한다.	권장
4	내벽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수성(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내열성 ③ 항균성 ④ 내부식성	권장

- ⑥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천장 면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빗물 등이 세지 않도록 잘 접합되어야 한다.	필수
2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 개선 조치가 어려운 작업장의 경우 오염이나 위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수
3	천장은 이물, 먼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필수
4	천장은 내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가 용이한 재질과 구조여야 한다.	권장

<참조> 천장 재질 종류 및 특성

항목	장 점	단 점
우레탄 평판넬	압축 평판 타입으로 제작되어 깨끗함 밀도가 있어 견고함 인테리어 용이함 일반적으로 식품 및 농산물 공장에 많이 사용	주문 제작으로 시공일이 길다 방화구조에 부적합 함
아이소월 판넬	가볍고 시공이 편리함 저비용 자재수급이 용이함	충격과 화재에 약함 밀도가 약하여 변형의 소지가 있음 방서문제, 식품공장에 부적합
그라스월 판넬	일체식으로 경량화되어 시공 용이 방음 및 단열성 우수 불연성 우수	파손 시 유리성유 날림으로 식품 공장에 부적합 방화구조를 요구하는 곳 이외에는 사용불가
콘크리트 천장	내구성, 내화성 뛰어남 마감처리 선택에 따른 다양한 시공 가능	하자보수 시 어려움 중량이 커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⑦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작업장의 문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목재 및 노후되어 녹이 많이 발생한 철재 문은 보수가 필요함	필수
2	작업장 문은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청소가 불량한 문은 청소 하여 청결히 관리하도록 한다.	필수

⑧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수
2	조명기구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필수
3	작업장 조명은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커버나 덮개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권장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선별 및 검사구역 : 540룩스 이상
- 일반 작업구역 : 220룩스 이상
-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 110룩스 이상

<참조> 조명의 종류 및 특성

항 목	장 점	단 점
나트륨 등	효율성 우수 수명이 길다 빛이 부드럽고, 복사열이 적음	정격전압을 벗어나면 수명이 단축 전압 낮으면 점등되지 않음
형광등	전력 절약형으로 제작됨 효율과 연색성이 뛰어난 3파장 램프로 되어 있음 수명이 길고, 휘도가 낮음 방진, 방습 가능	파손 시 형광물질이 분산됨 (보호용 플라스틱 튜브 설치요함)
수은등	수은등은 출력에 강함 다양한 종류 수명이 길고 광속 유지율 좋음 옥외 조명등에 적합	고압 나트륨등에 비해 효율이 낮음 연색성이 떨어짐
방폭등	내압에 의한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음 접하면 개구부를 통해 외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지 않도록 설계	사용 장소 한정

- ⑨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고추, 양파 등 농산물 고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와 증기 및 오존 세척의 경우 작업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2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3	설치된 환기시설은 작업장 내 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충분한 용량 이어야 한다.	권장

- ⑩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작업장의 출입문 및 반입구, 출하구는 바닥과의 공간 등이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셔터문의 경우 바닥과 공간이 생기면 쥐 및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를 설치한다.	필수
2	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	필수
3	작업중 개방하는 창문은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4	농산물의 특성상 작업시 반입구와 출입구를 열고 작업하는 경우 쥐나 해충의 침입 등 위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권장

- ⑪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분진, 분말이 발생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이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2	분진 발생이 많은 작업공정은 별도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분진 발생 근처는 집진기 등의 국소배기로 신속히 배출하여야 한다	권장
3	작업 후 반드시 기준에 맞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⑫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항 목	구분
1	작업장내 배관은 녹이 발생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필수
2	작업장의 횡배관은 기본적으로 천장에 은폐하도록 한다.	권장
3	배관은 종류별로 색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으며 재질은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⑬ 농산물을 수확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비·관리되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기계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 시설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설비 주변에는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필수
2	농산물과 접촉하는 설비의 재질은 녹이 슬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권장
3	농산물과 접촉하는 설비는 분해와 탈부착이 가능하여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권장
4	단위기계 및 기구류는 제품 생산에 충분한 규모와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권장
5	단위기계 설비는 공업용 윤활유나 물리적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권장

⑭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검사항	구분
1	세척농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설비의 표면은 갈라진 금, 틈새, 균열 등은 없어야 한다. 단, 단순 세정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필수
2	세척농산물과 접촉되는 설비의 외부 표면은 청소 작업으로 인한 마찰에 강하며, 살충제를 비롯하여 부식성과 상성을 띠는 살균용 화학제품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권장
3	장비 재질은 내충성, 내오염성, 청소성 고려하여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야 한다. 단,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수지제 사용이 가능하다.	권장

- ⑮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냉각 및 가열 처리시설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2	냉각 및 가열 처리시설은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권장
3	적정 온도범위를 이탈할 경우 작업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작업자에게 미리 교육 한다.	권장

- ⑯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단위기계설비에 대한 청소방법 2) 단위기계설비에 대한 청소주기	필수
2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

- ⑰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세정 및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
2	지하수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필수

- ⑱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세정,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음용수 기준을 분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단, 수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필수

- ①⑨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 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도 수를 세척수로 사용할 경우 용수저장탱크는 설치 아니할 수 있다.	필수

- ②⑩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설치 아니할 수 있다.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설치 아니할 수 있다.	필수
2	저온저장고의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단열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우레탄 폼으로 시공된 저온저장고는 위생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필수

- ②⑪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저장고 내의 창문 및 환기팬이 설치된 환기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2	저온저장고 출입문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열손실 방지 및 조류 및 해충의 침입을 막아주어야 한다.	권장

- ②⑫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파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저온저장고에 대상 농산물을 적재 할 경우에는 파레트를 사용 하여야 한다.	필수
2	저온저장고 온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 ㉓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저온저장고 내의 온도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저장고내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 ㉔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선별, 포장된 농산물의 운반시에는 탑차를 사용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어주어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전용차량 또는 외부차량, 임차된 차량 등을 이용하여도 된다.	필수
2	냉동유통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동탑차를 이용하도록 한다.	필수

- ㉕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세척농산물의 세척 및 포장공정 등 청결구역에서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가능하여 청결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사용되는 용기내부에 비닐 등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반 용기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단, 단순 세정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기 세척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필수

- ㉖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세척농산물의 세척 및 포장공정 등 청결구역에서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 용기와 구분하여 청결한 장소를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단순 세정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필수

㉗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2	화장실에는 세면대 등 손 세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3	화장실에는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페이퍼타월 등의 일회용 티슈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수건의 사용은 금지한다.	필수
4	화장실의 창문 등 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필수
5	화장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권장

㉘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며,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필수
2	화장실의 세면대 등이 청결하지 못하면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필수

㉙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작업장 및 관련 설비의 청소 설비, 기구는 작업장과 분리된 보관 장소, 작업장 내에 청소도구함, 작업장 내 페인트나 구획 테이프를 이용하여 보관장으로 지정한 곳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2	작업장 및 관련 설비의 청소관리에 적절한 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권장

- ③⑩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대상 농산물의 등외품은 보관용기 및 작업장과 떨어진 등외품 일시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처리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필수
2	파지 및 포장재 폐기물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권장

- ③⑪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 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세척농산물)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필수

- ③⑫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항목	점 검 내 용	구분
1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공정도)	필수
2	작업장 및 관련 설비의 청소 관리 기준	필수
3	작업장, 관련 기계설비, 저온창고, 등의 점검일지	필수
4	생산, 출하일지 관련서류	필수
5	기타 작업장 및 시설의 위생적 관리에 대한 사진 및 증빙자료	권장

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사업계획서

(2008. 12. .)

우수농협 과실종합유통센터

※ 본 자료는 예시이므로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정을 하여야 함

1. 우수농협 및 과실종합유통센터 개요

가. 목적

- 단체설립 목적
 -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 목적
 -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하여 산지유통센터(APC)시설을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농산물 수확후 처리·가공 등에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우수농협 현황

□ 일반현황

소재지 (사업자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23 (123-45-6789)		
대표자 (조합장)	나우수	연락처	031-446-5595
참여농가수	1,100명	설립년도	1962년
주요 품목	복숭아, 배, 사과	영농규모	1,141ha

□ 본·지소 사무실 및 직원현황

사무실	주소	직원수 (계약직)	임원현황
안양본소	안양시 만안구 123	14(4)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8명
이천지사	이천시 증포동 234	4(1)	
과천지사	과천시 정부구 청사동 345	3	
여주지사	여주읍 최고리 456	3	
계		24(5)	임원 총11명

다. 조직(전체) : 우수농협 조직도 : 별표

2. 우수농협 과실종합유통센터 기구

가. 조직, 업무 및 인력

APC 조직도



업무 및 인력 : 각 팀별 업무 역할

- 지도계(2명) : GAP 농산물 생산 전반에 관한 지도
- 판매계(4명) : 수확 후 포장, 판매, 정산 업무
- 운송, 이용계(2명) : 농산물 운송 저장 업무

전담자의 자격요건 등

직책	직	성명	학력 (학교·학과· ·년졸)	국가기술훈 자격증 (종류)	농업관련 근무경력 (기관명·근무년수)	품질관리사 자격증 (유무)	비고

덧붙임 : 자격요건 증빙서 사본 : 부

나. 보유시설 및 시설·장비 현황

시설 개요

- APC명 : 우수농협 과실종합유통센터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123
- 대지면적 : m² (평)
- 연 건 평 : m² (평) 구조
- 건축(준공)년도 :

시설별

	선별장	저 온 저장고	상 온 저장고	사무실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주차시설	비 고
동 수	1동	1동	1동		1동			
건평:m ² (평)	257평	50평	88평	40평	8평		200평	
구조								

※ ()평수는 생략 가능

주요설비 및 장비 보유 현황

	선별기	당도계	온도계	지게차	차량	파레트	포장기	비 고
보유대수	2식	1 대		1대	1 대			
형식		비파괴						
규격	16단	휴대용			1.5톤			

시설 및 기계설비 및 작업 흐름도 : 덧붙임

기타 참고사항

다. 관리시설 업무규정

(1) GAP관리시설운영대상지역

우수농협관할구역(이천시, 여주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원)으로 한다.

(2) GAP 관리시설 이용 품목 및 범위

GAP 관리시설 이용 품목

- 동부과수농협관할지역의 GAP인증농가에서 생산한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 '06 대상 품목 : 복숭아, 배

GAP 관리시설 이용 범위

- 우수농산물인증품목을 인증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GAP 관리시설을 이용하여 저장, 선별, 포장하여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출하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우선으로 한다.

(3) 시설·장비 운영 계획

수확농산물 운송

- 운송용기 : PV상자 등 이용 상처 등이 나지 않도록 한다.
- 생산자로부터 다음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 ①생산자 성명 ②재배지 소재지 및 면적 ③품목 ④물량
 - ⑤수확 또는 출하일자 ⑥이력추적관리번호 등
- 운송차량 : GAP 농산물 운송전용 차량을 지정 운송한다. 다만 전용차량을 운용하기 어려울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적재 운송한다.

수확농산물 저장

- 저장시에는 다음 입고 정보표시를 확인 후 저장 한다
 - ①입고일자 ②생산자성명 ③품목 ④물량 ⑤이력추적관리번호 등
- 적재시는 파레트 등을 이용하여 냉기 등 잘 통하도록 저장한다.
- 수확농산물은 품목별(품종별) 적정온도를 설정하여 저온저장고 또는 일반창고에 보관하고 품질변화가 적도록 관리한다.

선별 및 로트 편성

- 로트 편성은 개인별, 이력추적관리번호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별, 이력추적관리번호별 곤란할 경우 알자별, 또는 APC에서 구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 선별방식
 - 수동식 공동선별 : 복숭아(천중도 수확 이전)
 - 기계식 공동선별 : 복숭아(천중도, 황도), 배
- 당도 선별 : 비파괴 당도계를 이용 선별
- 포장재 및 포장방법
 - 포장재 : 골판지, PE포장
 - 완충재 : 스티로폼(난좌, 그물망), 미농지 등
 - 포장방법 : 포장재별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 수확후 처리 완료 농산물의 관리
 - 우수농산물인증(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
 - 표시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2의 규정에 따라
 - 포장재 측면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
 - 완제품 출고 정보 관리
 - GAP농산물 출고기록장에 다음 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①출고일자 ②품목 ③ 판매처명 ④ 물량 ⑤ 이력추적관리번호 등

(4) 근무자의 준수사항, 교육 및 자체관리·감독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 준수사항
 - 우수농산물생산을 지도하는 자(지도계)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인증농가가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한다.
 - 인증농가에 대하여 병 . 해충 처방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등 인증농가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력추적관리등록 등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담당하는 자(판매계)는 시설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작업장, 수확후 관리설비, 수처리시설, 저장시설, 수송운반, 위생 관리,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관리유지기준을 준수한다.

- 선별, 포장, 출하, 저장 등 수확 후 처리과정이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상품에 대하여는 리콜, 역추적 등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홍보

- 우수농산물생산관리 및 시설담당자 교육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자 : 년 1회 이상
 - 현지교육 및 수시교육
- GAP인증 참여농가 : 년1회 이상 농가 순회, 각종 회의시 활용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홍보
 - 농협소식지 및 시공보지, 농민신문 등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감독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 감독 책임자 지정
 - 감독책임자: 조합장, 관리책임자: 지도상무, 관리자 : 유통센터장
- 우수농산물인증품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인증 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내규에 따라 문책 할 수 있다.
- 우수농산물 인증품
 - (가)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 (나)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 (다)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 (라)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 (마)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품
 - (가)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 (나)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 (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 (라)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 (마)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인증품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

□ 인증품 생산·출하 계획

- 생산·출하계획량 : 292톤(복숭아 132톤 : 2kg포장, 배160톤 : 5kg)
- 출하계획

- 출하처 : 이마트, 농협유통센터, 가락동도매시장
- 인증농가로부터 농가별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시품을 인도받아 입고기록장에 기재하고 입고품은 저온, 또는 상온 저장여부를 결정하고 구분 보관 후 선과기를 이용 표준규격품으로 선별 작업후 계량 포장하여 우수농산물표시 및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를 한 후 검사후 이상이 없을시 출하하고 출고기록장에 기재한다.

□ 관리시설 농가이용 방법 (선별 및 출하 대금정산)

- 공동선별·공동계산의 수탁 사업으로 한다.

□ 품질관리 계획

○ 수확작업

GAP 수확작업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사전지도 한다.

- (가) 신선농산물을 수확할 때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며,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신선농산물 수확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나) 수확한 농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고, 수확한 농산물은 야간에 야외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수확작업에 사용되는 도구 및 운반용구는 유해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의 오염이 없도록 하고 세척, 소독 등을 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보관하도록 한다.
- (라) 작업장 인근에 청결한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설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인근시설을 이용하고, 특히 수확작업 전·후 및 용변 후 손을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마)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손상·고사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 제거하도록 한다.

○ 수확 후 관리

GAP 수확 후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사전지도·준수 한다.

(가) 수확물 운송

수확물을 GAP시설로 운송할때는 생산자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생산자 표시를 하여 GAP 농산물만 별도로 운송한다. 다만, 부득이 일반농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경우는 구분 적재하여 운송한다.

(나) 수확물 저장

GAP인증대상 수확농산물을 저장할 경우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 농산물과 동시보관 할 경우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구분이 확연하도록 보관한다.

(다) 수확 후에 사용하는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모든 약제처리는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수확 후 약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제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한다.

- 기록사항 : 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마) 법정전염병 보균자 등 농산물을 통해 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수확후 처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바) 생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의해 생산 선별 유통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사) 작업장에 종사하는 작업원 등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권장)

○ 수확후 시설 관리(별표의 시설점검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 쓰레기 및 유해물질 관리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준용 준수한다.

○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관리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준용 준수한다.

○ 환경문제관리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준용 준수한다.

○ 교육관리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준용 준수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

(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계획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유통단계)로 농관원 관할출장소(이천출장소)에 등록 신청

- 이력추적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 입고계획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의 주요 품목 및 구입처(예상)

품목(품종)	친환경 인증여부	작목반, 농가 등	농가수	재배면적 (㎡)	예상 입고시기	수량	비고
복숭아		작목반(장호원)	50	681,168	7월~10월		비세척
복숭아		작목반(이천)	10	148,581	7월~10월		“
복숭아		작목반(여주)	8	132,072	7월~10월		“
배	저농약	작목반(장호원)	20	301,947	9월~익년4월		“
배	저농약	작목반(이천)	20	225,065	9월~익년4월		“
배	저농약	작목반(여주)	24	386,805	9월~익년4월		“

※ 품목별 작목반으로부터 위탁판매

- 출고계획

구입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과 같이 판매할 계획

출하품목	예상 주요 출고처	예상출고시기	비고
복숭아	서울 등 이마트 각점 서울 등 양재물류센터 서울 가락동 농협공판장	7-10월	132톤
배	서울 등 이마트 각점 서울 등 농협물류센터 서울 가락동 농협공판장	9-익년4월	160톤

□ 이력추적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입고정보를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고정보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

기록된 정보는 해당 농산물 출하(고) 후 1년 이상 보관하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까지 보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관리계획

○ 이력추적품의 구분관리

- 이력추적농산물과 이력추적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의 식별단위(로트)를 정하고, 식별단위별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이력추적품의 표시

- 이력추적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별표3의7)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한 후 출하
- 관리번호 부여 : 농가단위 또는 일자별로 부여하되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소단위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시방법 :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

○ 기타 이력추적품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을 관리함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관리할 계획

(나)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 이력추적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협조
 - 우수농협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 안전성조사결과 이상품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우수농협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등 조사결과 이상품으로 판단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농산물이력추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장부의 열람·이력추적농산물의 수거 등을 요구에 적극 협조 할 계획
- 이상품에 대한 처분계획 등
 - 우수농협은 이력추적관리품의 보관 또는 취급한 농산물에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리콜처리는 택배 또는 직접 송부 등 신속히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시정명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리콜·용도전환·폐기 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협조 할 계획

(7) 사후관리

(가) 생산·출하과정 조사

- 수확 및 저장·보관단계
 -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선별·선과·포장 및 출하 단계
 -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우수농산물표시 등 각종 표시사항 및 이력추적관리 적정 여부
 - 기타 인증기준, 등급 등의 적합 여부

(나) 시판품 조사

출하처 조사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 인증을 받은 농산물 여부 및 비인증품 혼합 판매 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안전성 조사(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요청시 농관원 협조)

(다) 위반시 처분절차

자체조치

- 리콜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위반품 발생시
 - 당해품의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추적하여 당해 로트 리콜
 - 당해 로트와 같은 농산물 출하 및 작업 중지
- 경미한 위반품 발생시
 - 당해품의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추적하여 당해 로트 시정

행정처분 등

- 농관원 출장소에 위반사실 통보하여 행정처분 요구

기타

기타 필요사항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조하여 처리

라. 관리시설 관련 문서관리(접수, 보관, 폐기)

(1) 시설물 관리 대장

- 시설 및 기계설비 도면, 작업흐름도(준영구, 개선시 수정)
- 기타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서(3년)

(2) 입출고 관리 대장

- 농산물 입고기록대장, 농산물 출고기록대장 (1년이상)
- 기타 관리 및 점검대장 (1년이상)

마. 부록

(1) 별표

(가) 동부과수농협 조직도(전체) : 별첨

(나) 시설 및 기계설비 및 작업 흐름도 : 별첨

(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점검표

시 설 기 준		품목군		점검 결과 (○, x)	부적합시, 조치사항
		비세척	세척		
건 축 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 업 장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 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X			
	(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 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라) 천정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X			
수확 후 관리 시설	(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비·관리되어야 한다.				
	(2)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X			
	(3)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4)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 시설	(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X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X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X			
저장(예냉) 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 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파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4)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 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송·운반·설비	(1)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의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3)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위생관리	(1)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리유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2) 별지서식

(가) 농산물입고정보기록장

유통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작성 책임자			

일자별 (연월일)	구 입 처	품목명	품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 ※ 1. 규격 :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15kg", "20kg"등으로 기록, 수박 등 비 포장 농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 "상자", "망", "개", "통", "포"등으로 기록
 3. 비고 : 출고정보기록장의 관리번호 등을 기록

(나) 농산물출고정보기록장

유통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작성 책임자			

일자별 (연월일)	품목명	품종명	판 매 처	규격	단위	수량	관리 번호	작업내용	비고

- ※ 1. 규격 :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15kg", "20kg"등으로 기록, 수박 등 비 포장 농산물은 기록 생략
- 2. 단위 : "상자", "망", "개", "통", "포"등으로 기록
- 3. 관리번호 :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농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바. 기타 시설운용 규정(사업계획서에 포함)

사. 관련증거 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2) 정관 1부
- (3) 기타 APC 전담자 자격 증빙서류(이력서, 자격증 사본)
- (4) 수확 후 관리시설(우수농산물 관리시설)현황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심사평가표 작성예시

1. 신청인

시설명		품목명(세척, 비세척)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2. 심사자료

심사항목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미비사항 보완대책)	
① 신청서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2. 관리시설 및 인력현황 기재서류			
	3.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4. 시설의 지정기준 구비 증명서류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 전담조직 구비 여부			
	2. 업무의 불공정 수행우려 여부			
	3. 전담자 2인이상 확보여부			
	4. 전담자의 적격여부(임증근기)			
③ 시설의 적정성	“별첨 시설기준 심사결과 참조”			
④ 업 무 규 정 의 적정성	1.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의 관리방법 마련			
	2.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및 장비 보완 추진			
	3.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			
	5.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근무자 교육			
	6. 농관원장이 관리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⑤ 기 타				

“별첨”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별 심사결과

시설기준		품목군		미비사항 보완대책	심사 결과
		비 세척	세척		
건 폐 예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전 간 전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X			
	(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라) 천정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X			
수 확 후 관 리 설 비	(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비관리되어야 한다.				
	(2)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X			
	(3)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4)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미비사항 보완대책	심사 결과
		비 세척	세척		
수처리시설	(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응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X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응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X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X			
저장(예냉)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팔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4)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송운반설비	(1)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의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3)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위생관리	(1)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미비사항 보완대책	심사 결과
		비 세척	세척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기 타 시 설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 리 유 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3. 첨부서류(증빙자료 및 미비사항 보완대책 자료 등)

1)

위와 같이 제출함

	2006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

접수		신청자				처리 기한	지정 일자	지정 번호	비고
번호	일자	성 명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1	'06.2.28	홍길동	수원 00면 00리	114271- 1628515	290- 1234	'06. 3.29	'06. 3.27	0000 -000	

제 3 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차 례

I.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개요

1. 정의 및 목적
2. 해외동향
3. 추진현황
4. 관련법령 및 고시

II.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업무추진 요령

1. 이력추적등록 제도 요약
2. 등록신청
3. 등록심사
4.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
5. 등록증 교부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7. 관리번호 부여방법
8. 인증표시
9. 등록사항 변경
10. 등록기간의 연장
11. 장부 등의 비치
12. 사후관리
13.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및 벌칙

III.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예)

IV.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V. 질의 응답

I.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개요

1. 정의 및 목적

가. 정 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 제4호의3)

나. 목 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2. 해외동향

가. 국제적 추세

- 국제적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나. 유 령

- EU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 1760/ 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 1월부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 EU 식품기본법[Regulation(EC) 178/2002] 제18조에 따라 2005.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다. 일 본

- 2003년 정기국회에서 「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의무화 됨('03.12월 일부시행, '04.12월 전면시행)
-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이력기장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라. 북 미

- 미국은 이력추적제도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프로그램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회수프로그램에 Traceability가 도입되어 있음

3. 추진현황

- '03년~'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 시범사업 : 965농가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공포(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05. 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로고 확정
- '05. 11월 : Monitoring 실시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4. 관련법령 및 고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 제9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제10조(표준규격품등의 사후관리)
- 제11조(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5조(벌칙)
- 제36조(벌칙)
- 제38조(과태료)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 제32조(권한의 위임)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의9(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15조의10(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 제15조의11(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 제15조의12(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5조의13(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 제15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86호)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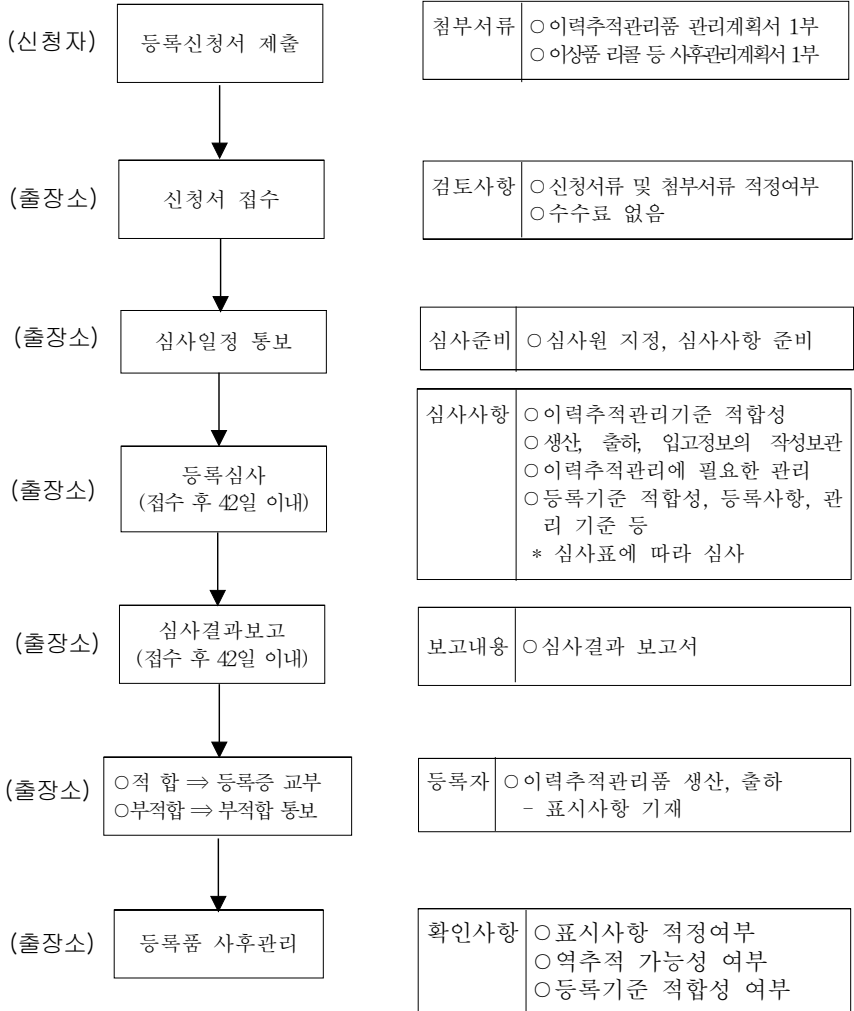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제2006-4호)

II.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업무추진 요령

1. 이력추적관리제도 요약

- 등록 및 사후관리 기관 : 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접수
- 등록유효기간 : 3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제5항)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42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관리절차



2. 등록신청(규칙 제15조의9)

- 의무등록자 :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규정된 것은 없음
- 희망등록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우수농산물(GAP)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 생산자·유통자·판매자의 개념
 - 생산자 : 농업인·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 유통업자 : 농산물 수확후 관리시설 대표자, 도매업자
 - 판매업자 : 소매업자(중·대형할인점 및 마트 등), 수출업자
- 대상품목 : 총 105품목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86호 별표 2)
 - 식량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4), 버섯(10), 채소(30), 과수·수실(17)
- 신청 구비서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1 부(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신청서 제출처 : 이력추적관리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출장소
 - 생산,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출장소를 2개소 이상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주 생산, 유통,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에 신청
- GAP인증을 받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를 GAP인증 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인증기관이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농관원 관할 출장소에 송부함
- 등록사항
 - 생산단계
 - ㉠ 품목명, ㉡ 생산자 성명, ㉢ 생산자 주소, ㉣ 생산자 전화번호,
 - ㉤ 재배지 소재지, ㉥ 재배지 면적, ㉦ 생산계획량

- 유통단계
 - ㉠ 수확후 관리시설 명칭(유통자 성명),
 - ㉡ 수확후 관리시설 소재지(유통자 주소),
 - ㉢ 수확후 관리시설 전화번호(유통자 전화번호)
- 판매단계
 - ㉠ 판매처 명칭, ㉡ 판매처 소재지, ㉢ 판매처 전화번호

3. 등록심사(규칙 제15조의9)

- 심사일정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출장소장은 심사자 선정 등의 작업을 실시한 후 심사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
- 심사반 편성 : 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 직원
- 심사내용
 - ㉠ 신청서류 구비여부
 - ㉡ 구비서류 내용의 적합성 여부 심사
 - ㉢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
- 등록기준(규칙 제15조의9 제3항)에 따라 심사 실시
 -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관리기준 농림부고시 제2006-5호 별표1)
 -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 세부적인 심사절차 및 방법(농관원 고시 제2006-4호 별표2 참고)

4.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농관원 고시 제2006-4호 별표1)

(1) 공통기준 (생산·유통·판매 단계)

- 관리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농약 등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생산단계 이력추적관리등록자 준수사항
- 농산물 생산·출하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하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
 - 생산단계에서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정보 : 생산자, 품목, 재배지·면적,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 한다)
- (3) 유통단계 이력추적관리등록자 준수사항
- 농산물 입고·출고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통단계에서 입고·출고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 ②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 한다.)
- (4) 판매단계 이력추적관리등록자 준수사항
- 농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5) 기타 사항
- **(정보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품의 구분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생산·유통·판매시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관리품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폐기, 용도변경 등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체계구축)** 당해 농산물의 유통경로의 생산·유통·판매자 모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등록증 교부(규칙 제15조의9 제8항·제10항 및 농관원 고시)

-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규칙 제15조의9 제10항 관련 별지제4호의 10)
 -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일련번호 5다섯 자리(전산입력 됨)
-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절차(규칙 제15조의9 제9항)
 - 희망등록의 경우 :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음
 - 의무등록의 경우 :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요구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참고)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유통자·판매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7. 관리번호 부여방법

- 관리번호는 출장소가 부여하는 등록번호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를 연결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 ① 이력추적관리등록번호는 농관원에서 부여함(등록심사 후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입력 시 일련번호 결정)
 - ② 연도번호는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한다.
 - ③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①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 ② 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위험부담이 작아 질 수 있다.
-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 예) 농관원에서 「0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 APC의 대표자가 「홍길동 농가가 생산한 딸기 500kg」를 포장하여 2006년 12월 25일 ㉡ 마트로 출하하고, ㉠ APC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 이력추적관리번호는 「00012-0600001」임
 - ※ ㉠ APC 대표자는 00001의 아래의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00001의 이력 : APC명(㉠ APC), 생산자(홍길동), 출하날짜(2006년 12월 25일), 품목(딸기), 물량(500kg), 출하처(㉡마트)

8. 인증표시

- 이력추적관리품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자가 포장지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를 하게 되며, 그 표시는 아래와 같음

<표준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소포장·날개포장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 이 상품은 농산물관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품입니다.		
원산지(시도/시군)			
품목(품종)		GMO여부	
중량·개수		등급	
생산자 (작목반명)	성명		
	주소(전화번호)		
수확후 관리시설	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 상품은 농산물관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품입니다.
이력추적관리번호	

○ 표시방법

-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이력추적 관리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심벌 로고와 이력추적관리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 표시내용

- 원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 :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 여부를 표시
-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갯수
-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 생산자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이 관리된 시설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 농산물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개체 식별번호

9. 등록사항 변경(규칙 제15조의12)

- 이력추적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민원인 → 농관원 관할 출장소장)
- 출장소장은 동 신고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출장소장→ 민원인)
- 관련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10. 등록유효기간 연장(규칙 제15조의14)

-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등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등록유효기간은 3년임(법 제7조의5 제5항)
- 출장소장은 등록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농관원 고시 제2006-4호)
 - 일반농산물: 재배기간 + 유통기간 1년(건조농산물 2년)
 - 인삼류 : 재배기간 + 유통기간10년(수삼 : 재배기간 + 유통기간1년)
 - 약용작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5년
- 관련서식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11. 장부 등의 비치

- 이력추적관리 등록자가 관리품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서식을 농관원고시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

12. 사후관리

-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 반기 1회 이상 실시
- 조사근거 : 법 제10조
 -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에 적합성 등의 조사
 - 표시자의 관계대장 또는 서류의 열람
 - 관리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서의 시험의뢰
- ※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필요
- 조사사항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관리품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이력추적관리등록자가 입회거부·방해·기피·품위·표시사항 확인·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이력추적관리등록자의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했을 때
- 위반사항
 - 등록기준 위반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위반
 -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관리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안전성 조사 :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조사 실시
- 조사결과조치
 -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농관원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위반사항 발생시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한 출장소에 통보

13.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및 벌칙

- 행정처분
 - 이력추적관리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정·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 등록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

행정 처 분 대 상	해 당 법 조 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조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
(4)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조	등록취소	-	-
(5)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조	등록취소	-	-

○ 과태료부과(300만원 이하)

- 법 제7조의 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로서 법 제7조의 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법제7조의 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로서 법 제7조의 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법제7조의 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로서 법 제7조의 5제4항의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아니한 자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의무등록 대상)
 -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Ⅲ.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예)

1. 농산물이력등록신청서 작성[별지 제4호의9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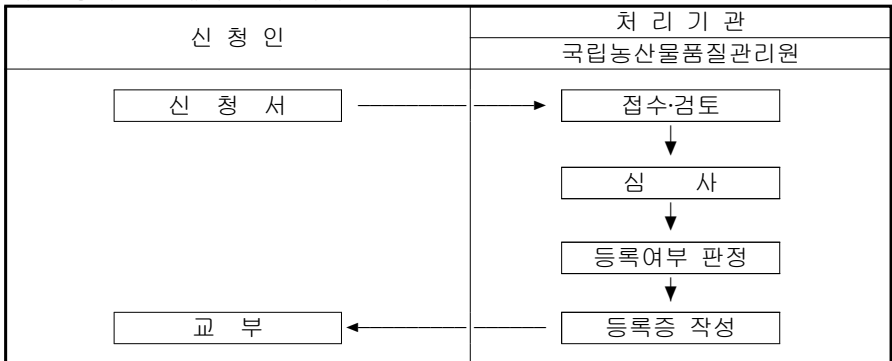
(앞 쪽)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홍길동 (최우수작목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50101-1234567
	대표자성명			직원수 5명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6 동 433-2	전화번호	031)446-5595
품목(품종)	사과, 배(판매업소는 기재를 생략)			
관리단계(해당단계에 ○표 표시)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8년 2 월 17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산물이력추적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농산물이력추적품관리계획서 작성(예시)

농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 경작 농지 중 옥동리 111번지 800평과 정산리 55-8번지 1,200평의 농장에서 사과, 풋고추를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 판매할 계획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필지별·품목(종)별 예상 생산량 및 생산 시기는 다음과 같음

필 지 별		생산품목(종)	예상생산량	예 상 생산시기
지 번	면 적			
산내면 옥동리 111	800평	사과(국광)	5,000kg	9월
산내면 정산리 55-8	300평	풋고추	1,500kg	8~9월
	900평	사과(후지)	4,500kg	10~11월

* 농가수가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나. 출하계획

- 생산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과 같이 출하할 계획

출하품목(종)	예상 주요 출하처	예 상 출하시기	비 고
사과(국광)	농협중앙회 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터	9월	
	청원군 청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9월	
풋고추	청원군 청원산지유통센터	8~9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8~9월	
사과(후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0~11월	
	청원군 청원산지유통센터		

※ 농업인·작목반 등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 하는 경우 그 수탁처를 출하처로 기록

2. 이력추적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의 주요 품목 및 구입처(예상)

출하품목	예상 주요 구입처	예상 입고시기	비 고
포 도	가평군 가평포도 작목반	8월	
배	가평군 청평면 홍길동 외 20명	10월	
사 과	가평군 하면 현리 영농조합	11월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이 농업인·작목반 등으로부터 위탁을 판매 하는 경우 그 위탁처를 구입처로 기록

나. 출고계획(유통자)

- 구입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과 같이 판매할 계획

출하품목	예상 주요 출고처	예상 출고시기	비 고
포 도	서울 A마트	8월	
배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0월	
	가평군 B 마트	10월	
사 과	가평군 C백화점	11월	
	서울 창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1월	

3. 이력추적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 농산물 생산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생산정보를 「농산물재배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특히, 농약(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과 유무기질 비료 사용내역은 빠짐없이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하정보를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다.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유통자·판매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입고정보를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유통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고정보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마. 생산·출하,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는 해당 농산물 출하(고) 후 1년 이상 보관하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까지 보관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관리계획(공통)

가. 이력추적품의 구분관리

- 이력추적농산물과 이력추적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의 식별단위(로트)를 정하고, 식별단위별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

나. 이력추적품의 표시

- 이력추적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별표3의7)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거관리품의 표시를 한 후 출하(고)
- 표시방법 :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

다. 기타 이력추적품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을 관리함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관리할 계획

3.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생산자·유통자·판매자 공통)

1. 이력추적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이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품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등 조사결과 이상품으로 판단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농산물이력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장부의 열람·이력추적농산물의 수거 등을 요구에 적극 협조할 계획

3. 이상품에 대한 처분계획 등

- 신청인 홍길동은 이력추적품의 보관 또는 취급한 농산물에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시정명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협조 할 계획

IV.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1. 이력추적정보 전산 입력 절차(팜투데이블)

<빠른매뉴얼>

입력정보	입력 사항	입력 절차	
회원가입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farm2table.kr) ➔ 회원가입 ➔ 회원정보입력 ➔ 회원가입버튼 클릭
이력추적 등록정보 연결	이력추적등록 번호	로그인 ➔ 이력 추적정보관리 ➔ 생산이력관 리 ➔ 권한관리	➔ 이력추적등록정보연결 ➔ 이력추적등록번 호입력 ➔ 이력추적등록자검색 ➔ 소속회원선 택 ➔ 소속회원연결 선택
재배단위	품목, 필지, 재배기간 등		➔ 재배단위 ➔ 행추가 ➔ 재배단위정보입력 ➔ 저장
자재정보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자주 쓰는 자재	로그인 ➔ 이력 추적정보관리 ➔ 생산이력관 리 ➔ 기초정보	➔ 자재정보 ➔ 행추가 ➔ 자재정보입력 ➔ 저장
거래처정 보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거래처정보 ➔ 행추가 ➔ 거래처정보입력 ➔ 저장
상품정보	등급, 규격, 속성 등		➔ 상품정보 ➔ 행추가 ➔ 상품정보입력 ➔ 저장
재배정보	작업종류, 자재명, 사용방법, 사용량 등	로그인 ➔ 이력 추적정보관리 ➔ 생산이력관 리 ➔ 재배정보 /출하정보	➔ 재배정보 ➔ 행추가 ➔ 농약/비료/친환경/ 재배일지 등 작업종류 선택 ➔ 재배정보 입력 ➔ 저장
출하정보	출하처, 규격, 수량 등		➔ 출하정보 ➔ 출하정보관리 ➔ 상단행추가 ➔ 출하처입력 ➔ 하단행추가 ➔ 출하정보입력 ➔ 저장 ➔ 마감

2. 정보관리 들어가기

팜투테이블(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회원(이력추적등록자)이 단계별 이력추적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며, 이력추적등록정보연결 이후에는 해당하는 단계의 이력추적정보관리 메뉴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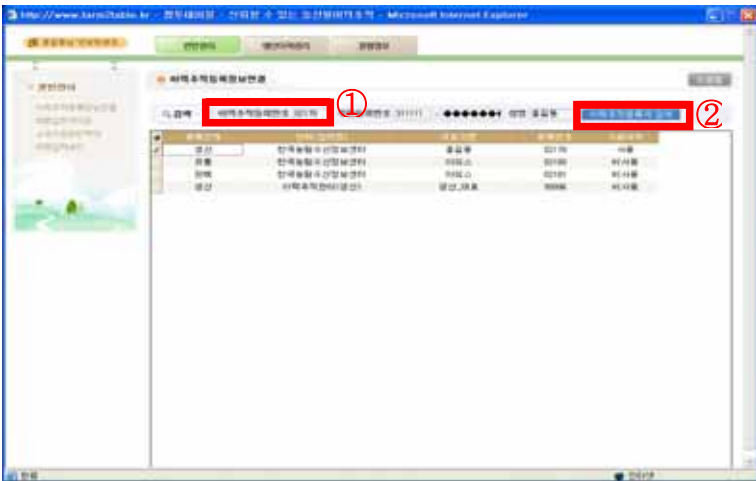
- ① 팜투테이블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이력추적정보관리]**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 **[이력추적정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이력추적정보관리 메뉴에 처음 접속한 경우 화면 상단에 이력추적정보관리 사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이 안내문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 **[ActiveX 컨트롤 설치]**를 선택합니다.
- ③ 이력추적정보관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대화창이 나타나면 **[예]** 단추를 클릭하여 업데이트 합니다.
- ④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력추적정보관리의 **[권한관리]**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3. 권한관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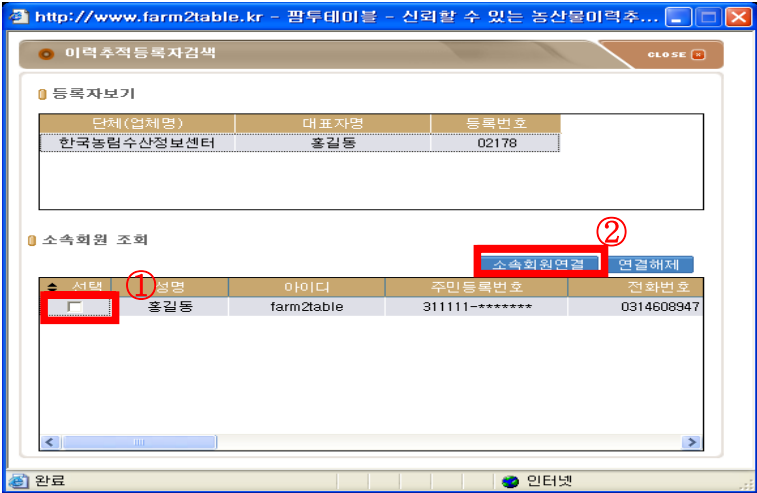
1) 이력추적등록연결

이력추적등록번호(5자리)로 팜투테이블 사용을 위한 이력추적등록자 및 소속 회원정보를 검색·연결 합니다.

- ① '이력추적등록번호' 입력란에 이력추적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력추적등록자 검색]** 단추를 클릭합니다.



② 등록하고자 하는 소속회원을 하단의 ‘소속회원 조회’에서 선택한 후 [소속 회원연결]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연결을 해제할 경우에는 선택 후 연결해제 단추를 클릭합니다.



2) 생산이력관리하기

가. 기초정보

(1) 등록자정보

생산단계의 이력추적등록자에 대한 등록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생산자 부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생산이력관리]메뉴의 [기초정보]의 [등록자정보]에서 이력추적등록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부가정보를 입력하려면 화면을 아래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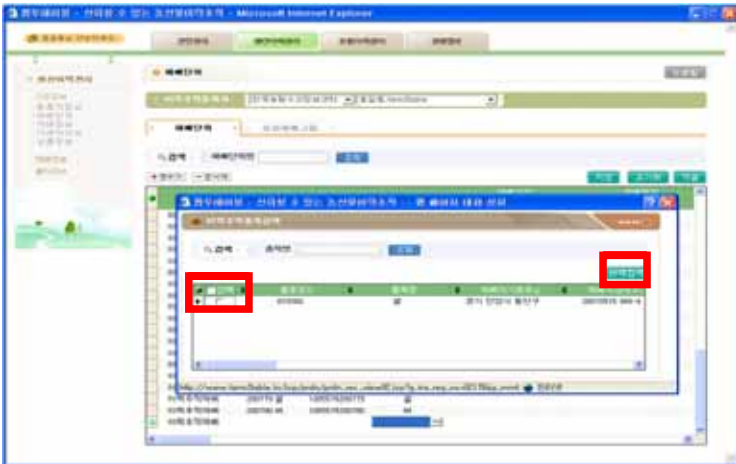
② 생산자 부가정보에 이미지를 등록하려면 ‘대표이미지’의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③ 홈페이지, 담당자 등 생산자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 란에서는 워드프로세서 기능과 HTML 편집, 오디오 삽입, 이미지 삽입 등 다양한 기능으로 추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단추를 클릭하여 변경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2) 재배단위

재배단위에서는 생산자가 재배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출하를 위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① 새로운 재배정보를 기록하려면 **[생산이력관리]** 메뉴의 **[기초정보]**의 **[재배단위]**를 클릭합니다. **[행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 ② 새로 추가된 행에서 **'재배구분'** 란을 클릭하면 목록내림단추가 표시됩니다. 목록내림단추를 클릭하여 **'이력추적재배'**를 선택합니다.
- ③ 새로 추가된 행의 **'재배단위명'**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재배단위가 많을 경우 필지별 구분을 위한 항목으로 지번, 성명 등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④ **'재배품목'** 입력란을 클릭하면 **...** 단추가 나타납니다. **...** 단추를 클릭합니다.
- ⑤ '이력추적품목검색' 창에서 **'선택'**을 클릭하고 선택입력을 클릭하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 ⑥ **'재배기간'**은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8자리 숫자로 직접 입력합니다.
 - ⑦ **'재배정보 공개여부'**에서 **'농약'**, **'비료'**, **'친환경'**, **'재배일지'** 각 항목을 클릭하면 목록내림단추가 표시되며, **'Y'**, **'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단추를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 ※ 재배정보 공개여부에서 'N'를 선택한 경우, 소비자는 '농약', '비료', '친환경', '재배일지' 항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자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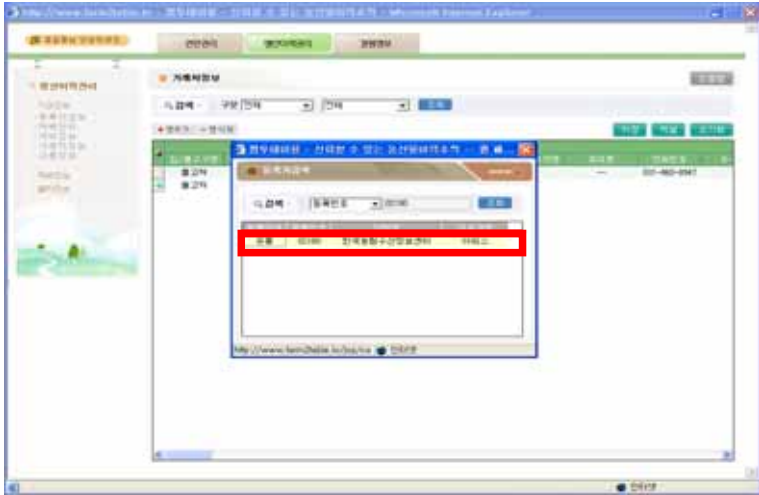
생산자가 자주 사용하는 자재(농약, 비료, 친환경) 정보를 등록하여 재배정보 관리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빠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새로운 자재정보를 등록하려면 **[생산이력관리]** 메뉴의 **[기초정보]**의 **[자재정보]**를 클릭한 후 **[행추가]**를 클릭합니다.
- ② **‘자재종류’** 입력란을 클릭하면 목록내림단추가 나타납니다. 목록내림단추를 클릭하여 ‘농약’, ‘비료’, ‘친환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③ **‘자재명’** 입력란을 클릭한 후 **☰** 단추를 클릭합니다.
- ④ 선택한 자재 종류의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재 종류 목록이 모두 표시됩니다.
- ⑤ 조회된 자재 목록에서 원하는 자재를 더블 클릭하면 **‘자재명’**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검색 창이 닫힙니다.
- ⑥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하여 새로운 자재정보 입력 또는 수정한 자재정보를 저장합니다.

(4) 거래처정보

생산자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로 해당거래처 정보는 출하 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① 새로운 거래처정보를 등록하려면 **[생산이력관리]** 메뉴의 **[기초정보]**의 **[거래처정보]**를 클릭한 후 **[행추가]**를 클릭합니다.
- ② **‘입/출고구분’** 입력란을 클릭하면 목록내림단추가 나타납니다. 목록내림단추를 클릭하여 **‘출고처’**를 선택합니다.
- ③ **‘등록번호’** 입력란을 클릭한 후 **☰** 단추를 클릭합니다.
- ④ **‘등록자검색’** 창에서 이력추적등록번호/대표자명/단체명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⑤ 조회된 등록자를 더블 클릭하면 **‘등록번호’**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검색 창이 닫힙니다.



⑥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하여 새로운 거래처정보를 저장합니다.

(5) 상품정보

생산자가 정보관리 하는 도량형 표준단위 및 상품정보에 대하여 기록관리 하는 메뉴입니다.

① 새로운 상품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생산이력관리]**메뉴의 **[기초정보]**의 **[상품정보]**를 클릭한 후 사용할 단위를 선택한 후 **[단위저장]**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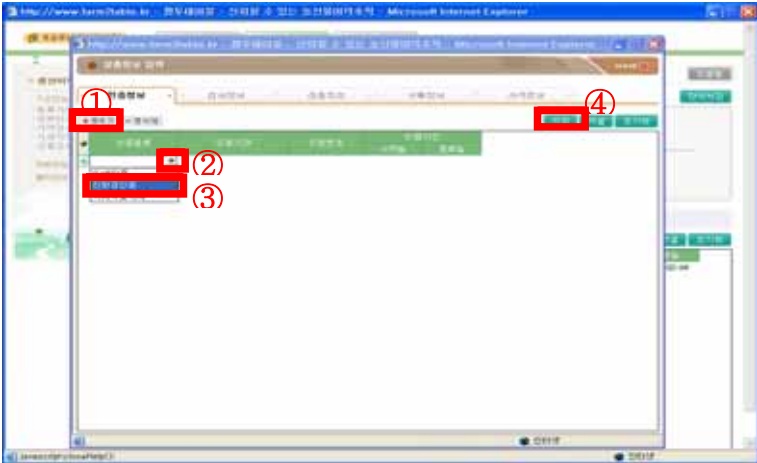
② 새로운 상품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하단의 **[행추가]** 단추를 클릭한 후 **'상품명(브랜드)'** 입력란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③ **'품목(종)'** 입력란을 클릭한 후 **...** 단추를 클릭하여 품목을 입력합니다.

④ **'등급'**과 **'규격'** 정보는 해당 상품에 대한 등급과 규격을 입력하는 것으로, **[행추가]** 단추를 클릭한 후 해당 등급을 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⑤ **'속성'**은 **'인증정보'**, **'검사정보'**, **'상품특성'**, **'구매정보'**, **'가격정보'**를 등록합니다. 각각의 메뉴에서 **[행추가]** 단추를 클릭하여 입력후 **[저장]**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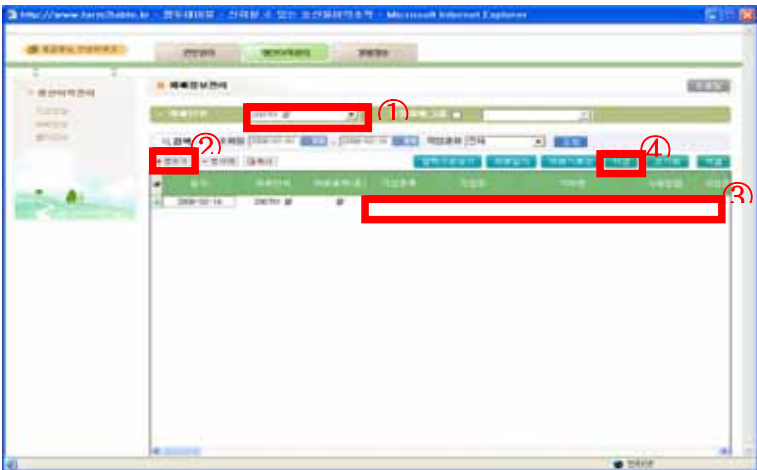
⑥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하여 새로운 상품정보를 입력합니다.



나. 재배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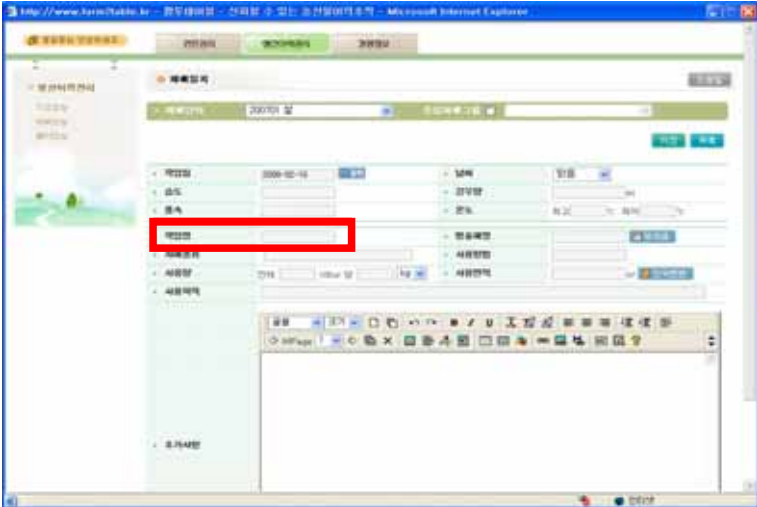
생산자가 재배정보에 대해 기록관리 하는 메뉴입니다.

- ① 새로운 재배정보를 등록하려면 **[생산이력관리]**의 **[재배정보]**에서 재배단위를 선택한 후, **[행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 ② **'작업종류'**와 **'자재명'**을 선택하고 **'사용량'**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③ ‘**작업종류**’에서 ‘**재배일지**’를 클릭하면, 재배일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재배일지 기록은, 재배단위 선택후, ‘**작업일**’, ‘**작업명**’을 필수로 입력합니다.

(이외 날씨, 습도, 강수량, 풍속, 온도, 작업일, 병충해명, 자재종류,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면적, 사용목적, 추가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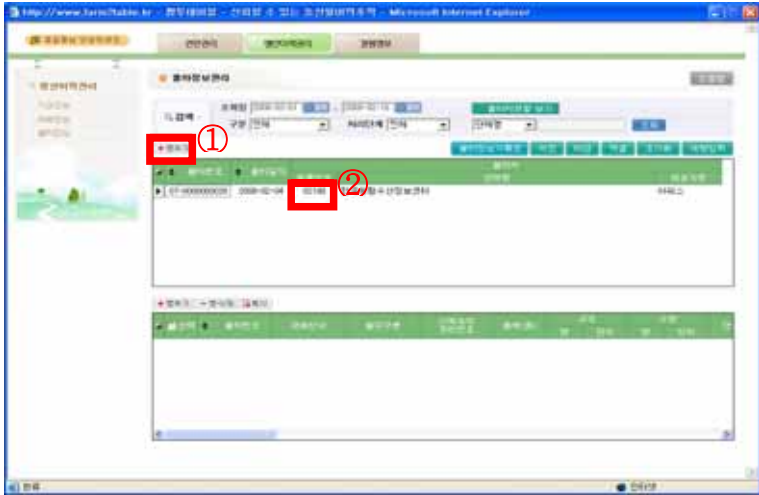
다. 출하정보

(1) 출하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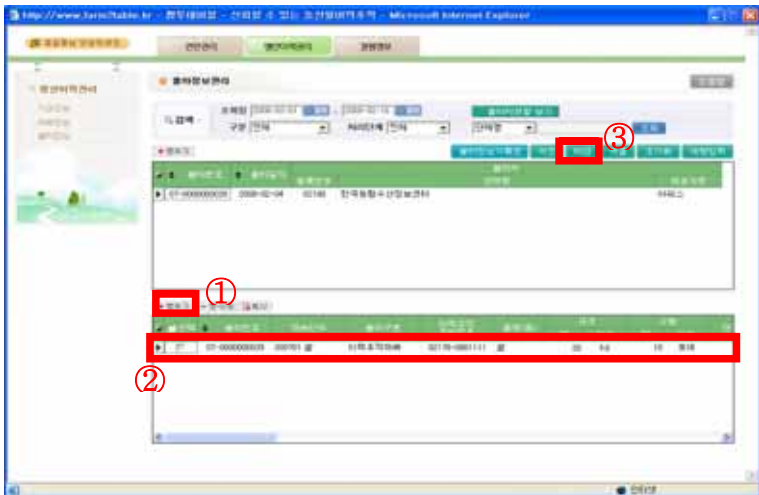
생산자가 출하한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상단화면은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하단화면은 출하에 대한 상세정보 조회 및 상세출하정보를 기록관리합니다.

① 새로운 출하정보 등록하려면 **[생산이력관리]**메뉴의 **[출하정보]**의 **[출하정보관리]**를 클릭한 후 **[행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되고 출하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② 거래처 등록번호의 **[...]** 단추를 클릭하여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하단화면에서 **[행추가]** 단추를 클릭 후, '재배단위'의 **[...]** 단추를 클릭하여 재배단위를 입력합니다. '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규격', '수량', '상품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 후, '선택'에 표시하고 **[마감]** 단추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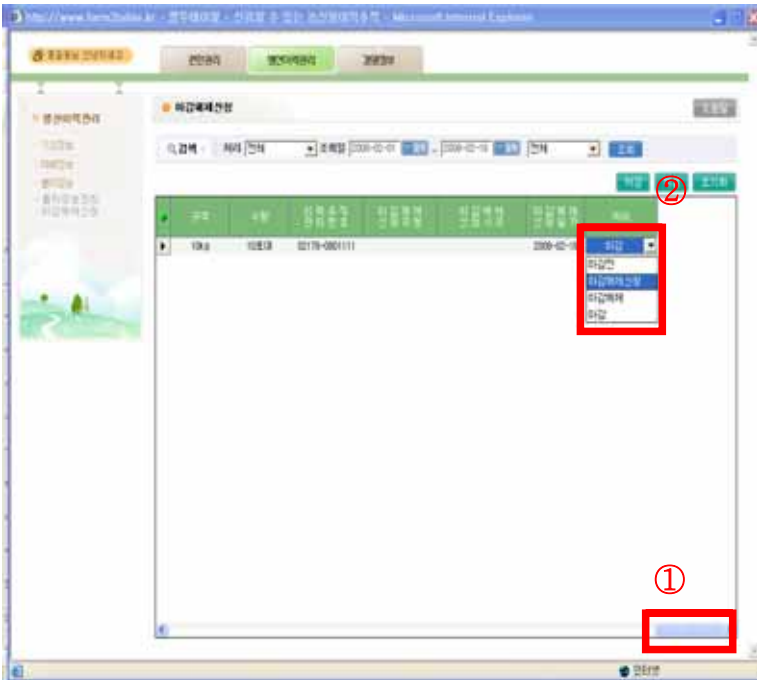


(2) 마감해제신청

처리상태가 마감인 정보를 마감해제신청을 하여 저장하면 팜투 테이블 관리자의 마감해제승인 과정을 거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① 마감해제신청을 하려면 [생산이력관리]메뉴의 [출하정보]의 [마감해제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마감해제 신청유형'과 '마감해제 신청사유'를 기입합니다. '처리'의 목록내림단추를 클릭하고 처리상태를 선택한 후 변경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2. 농산물이력추적정보 조회 절차(팜투테이블)

소비자는 이력추적농산물을 구입한 후, 팜투테이블에서 단계별 이력추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농산물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 12자리**를 숫자로만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검색결과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클릭하면 이력추적농산물의 이동정보, 재배정보, 상품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단체/업체명을 클릭하면 이력추적등록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이동정보'에서는 이력추적농산물의 생산출하정보, 유통 입/출고정보, 판매 입/출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산정보'에서는 이력추적농산물을 생산한 생산자의 재배정보와 이력추적농산물을 유통한 유통자의 수확후관리정보가 조회됩니다. '상품정보'에서는 이력추적농산물의 인증정보, 검사정보, 구매정보, 가격정보, 상품특성이 조회됩니다.

이력추적관리번호

999940800001

이력추적 : 단감 (사과)

유통자 : 마스터(생산) (마스터(생산))

농산물 : 사과

주소 : 경기도양양시

이동정보
생산정보
상품정보

생산자

- 마스터(생산)

이력추적관리번호: 99994

입고: 2009-12-16

➔

유통자

- 마스터(유통)

이력추적관리번호: 99995

입고: 2009-12-16

출고: 2009-12-16

➔

판매자

- 이력추적관리(판매)

이력추적관리번호: 99999

입고: 2009-12-16

이동정보

농산물이동정보

출고일차	생산자	거래처	품목(중)	출고량	이력추적관리번호
출고: 2009-12-16	마스터(생산)(마스터(생산))	마스터(유통)	사과	100kg / 100상자 (B>C)	99994-0000001

유통 입/출고정보

입출고일차	유통자	거래처	품목(중)	입출고량	이력추적관리번호
입고: 2009-12-16	마스터(유통)	마스터(생산)	사과	100kg / 100상자 (B>C)	99994-0800001
출고: 2009-12-16	마스터(유통)	이력추적관리(판매)	사과	100kg / 100상자 (B>C)	10000000-0000001

판매 입/출고정보

입출고일차	판매자	거래처	품목(중)	입출고량	이력추적관리번호
입고: 2009-12-16	이력추적관리(판매)	마스터(유통)	사과	100kg / 100상자 (B>C)	99995-0000001

- 114 -

V. 질의 응답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란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을 역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진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백화점 등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판매자 등록은 본사와 지점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 첫째 판매하기 위한 원료농산물 구매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본사에서 일괄적인 구매 또는 지정별로 각각 구매하는지를 조사하여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지점의 리스트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 지점에서는 원료의 매입내역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점에서 각각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본사에서 판매하기 위한 원료농산물을 공동으로 구매하였다도 지점이 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를 경할 때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생산+유통, 생산+판매, 생산+유통+판매, 유통+판매 등의 경우 신청서를 1건으로 접수하되, 제출서류(단계별 관리계획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등)는 각 해당 단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은 1건으로 교부하되 등록번호란에 각각의 등록번호를 부여
예) 생산자(제00002호), 유통자(제00007호), 판매자(제00012호)

■ 농산물 생산자·유통자·판매자가 해야 하는 일은 ?

- 이력추적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유통자·판매자는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할 출장소)에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 당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지에 이력추적관리품 임을 표시(인쇄, 스티커 부착 등)하여야 합니다.

■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취급하는 생산자(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유통자(APC, RPC, 도매업자 등)·판매자(대형할인점, 농협하나로마트, 소매업자 등)와 이력추적관리품 취급을 희망하는 생산자·유통자·판매자입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절차는 ?

- 이력추적등록 희망자가 등록신청서와 농산물이력추적상품의 단계별 관리계획서, 문제 발생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 출장소)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은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42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등록자가 관리해야 하는 생산·유통관련 정보는 ?

- 생산자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농산물 생산정보(품목, 재배지, 농약·비료 등 사용내역)와 출하정보(언제·누구에게·어떤 품목을·얼마만큼 팔았는지)입니다.
- 유통자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농산물 입·출고정보(언제·누구에게·어떤 품목을·얼마만큼 사서, 누구에게 팔았는지)입니다.
- 판매업자가 기록·관리하는 정보는 농산물 입고내역(언제·누구에게·어떤 품목을·얼마만큼 샀는지)입니다.

■ 생산자의 이력추적관리 로트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일년에 생산한 농산물 전체를 하나의 로트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 생산자가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로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물상태로 APC 등에 출하하여 APC가 포장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등록번호와 로트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로트번호는 생산조건이 같다면 번호를 하나로 할 수 있으며, 출하시기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농산물을 폐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은 ?**

- 이력추적관리품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자가 포장지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를 하게 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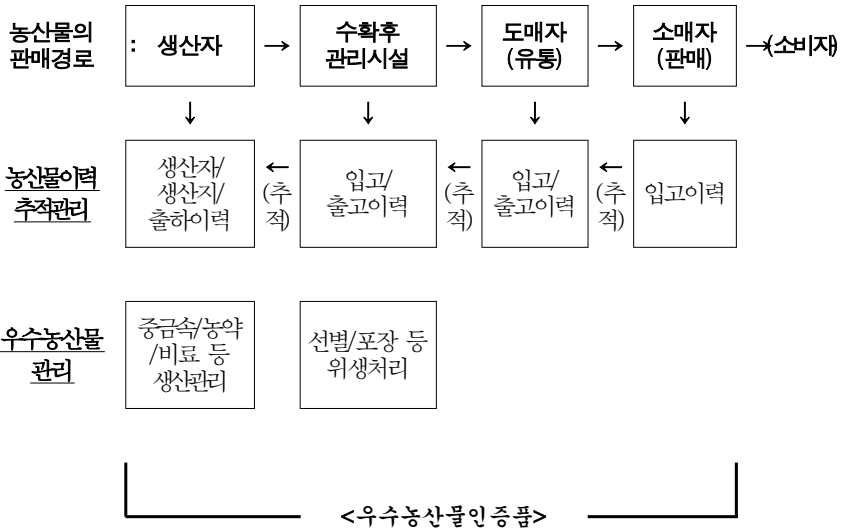
<표준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소포장·날개포장 이력추적관리품 표시>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품입니다.			
원산지(시도/시군)							
품목(품종)				GMO여부			
중량·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명)		성명		주소(전화번호)			
수확후 관리시설		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이력추적 관리번호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품입니다.	
이력추적 관리번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의 관계는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과정을 명확히 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이며,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을 관리하여 농식품 위해요소가 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우수농산물 인증품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수농산물인증품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 우수농산물관리
 ⇒ 안전성이 강화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농산물

■ 농산물이력추적 농산물을 취급하면 잇점은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체계가 확보되면 농산물에 대한 정보(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내역, 유통경로 등)가 역추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동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에 따른 반사적 혜택(농산물의 판로확보, 적정수준의 농산물 판매 수입 등)이 농가·유통자·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

-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한 경우 품목군별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이력추적품에 대하여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력추적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의 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까 ?**

- 인터넷으로 농산물의 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전산 시스템구축을 시작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GAP 농산물 등 일부 농가의 생산출하정보에 대해서는 2006년 말부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통자·판매자가 이력추적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품을 취급하였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판매업소 등이 이력추적관리등록품 판매업소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했다는 풋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등이 이력추적관리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참 고 자 료

1. 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86호)
3. 우수농산물 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85호)
4. 우수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제2006-3호)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제 2006-4호)
6. 우수농산물관리 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23호)
7.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리기준의 분석성적서
인정기관 지정 및 업무처리 지침
8. 행정처분 절차도
9. 인증기관 현황표

1. 농산물관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농산물관질관리법	농산물관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관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9, 2002.1.14, 2005.8.4, 2008.2.29, 2008.6.13></p> <p>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림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 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 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5. ~7. 생략</p> <p>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p>	<p>제14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①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⑥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⑦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p>	<p>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일 것</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6.1.16]</p> <p>제14조의3(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p> <p>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6.1.16]</p> <p>제14조의4(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p> <p>①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5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p> <p>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6.1.16]</p>	<p>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p> <p>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④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⑥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3(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와 같이 하되, 인증기준에 의한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의4(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우수농산물 인증을 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5(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p>		<p>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 (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p>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06.6.30></p> <p>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6(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p> <p>[본조신설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05.8.4]</p> <p>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p>		<p>제15조의7(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 인증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p>		<p>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p> <p>③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06.6.30></p> <p>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30></p> <p>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p> <p>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p>		<p>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p> <p>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8(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7조의4</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p>		<p>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9(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절차 등) ①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p>		<p>등 사후관리계획서</p> <p>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3.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특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p>		<p>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⑧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청하도록 요구할 것</p> <p>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⑪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0(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3.3></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1(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사항) ①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사. 생산계획량 2. 유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또는 유통자 성명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또는 유통자 주소 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또는 유통자 전화번호 3. 판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판매처 명칭 나. 판매처 소재지 다. 판매처 전화번호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2(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3(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7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5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9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1.29, 2005.8.4></p> <p>1. ~ 2. 생략</p> <p>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3. 생략</p> <p>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p>		<p>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 2. 생략</p> <p>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3. 생략</p> <p>제10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p> <p>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p> <p>2.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p> <p>3.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등에의 시험의뢰</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1.29></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p>	<p>제19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 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2005.8.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p> <p>제3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p>	<p>제32조 (권한의 위임) ① ~ ② 생략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p>	<p>제46조 (수수료)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 검정의 신청에 관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 8. 생략 <p>[전문개정 2005.8.4]</p> <p>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개정</p>	<p>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2007.12.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3의2.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의 인증 3의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의4.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의5.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 4. ~ 16. 생략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1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p>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1.10.8, 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 농산물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5>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002. 1.14>)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농림관련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임·직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p>	<p>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고시</p> <p>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p> <p>⑤ ~ ⑥ 생략</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8.4></p> <p>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표시·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 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p> <p>3. ~ 5. 생략</p> <p>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p>2. ~ 8. 생략</p> <p>제3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p> <p>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p> <p>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2.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별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06.1.16>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제19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우수농산물인증품<신설 2006.1.16>

행정처분대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나. 이력추적관리품<신설 2006.1.16>

행정처분대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3)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
(4)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등록취소	-	-
(5)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등록취소	-	-

[별표 3]<개정 2002.7.13, 2006.1.16, 2008.7.7>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가목	300만원
나.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나목	300만원
다.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다목	300만원
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3의2] <개정 2006.1.25, 2007.6.29>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3 관련)

1. 표지도표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기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글자 색상은 검정색(Black 100)으로 한다.

(2)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Cyan 76 + Yellow 91)으로 한다.

(3) GAP 모양의 색상은 청색(Cyan 91 + Magenta 43)으로 한다.



Pantone 285 CVC
Cyan 91 Magenta 43

Pantone Process Black CVC
Black 100

Pantone 361 CVC
Cyan 76 Yellow 91

마.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p>우수농산물인증 인증기관: 인증번호:</p>	<p>*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입니다.</p>		
원산지(시도·시군구)			
품목(품종)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	
중량·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명)	성명		
	주소(전화번호)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의 심벌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 가. 로고 : 로고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로고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 나. 원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 원산지 표시규정에 의하여 기재
- 다.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라.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 마.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 바. 생산자(작목반명) : 생산자성명 또는 작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 사.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3의3] <개정 2006.1.25, 2007.6.29>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15조의5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우수농산물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2인 이상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자세, 우수농산물관리 관련 법령,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2. 시 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건축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관리기준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X		
	(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라) 천정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X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수확후관리설비	(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바관리되어야 한다.			
	(2)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X		
	(3)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4)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시설	(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 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X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X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X		
저장(예냉)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파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4)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수송·운반설비	(1)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의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3)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위생관리	(1)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리유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규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방법 마련
-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 보완 추진
- 다.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
-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
-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 교육
- 바.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의4]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때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관리할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별표 3의5]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7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 갖출 것
-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시 설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분석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석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다.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 교육

바.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3의6]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만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만을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제7조의4 제3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다. 우수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별표 3의7] <개정 2006.1.25, 2007.6.29>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13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화살표는 연두색으로(Cyan 30 + Yellow 100) 한다.



(2) 또 다른 화살표는 녹색(Cyan 70 + Yellow 100) 한다.



(3) 원형은 청색(Cyan 100 + Magenta 80)으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p>농산물이력추적관리</p>		<p>*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입니다.</p>	
원산지(시도·시군구)			
품목(품종)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	
중량·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명)	성명		
	주소(전화번호)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심벌 로고와 이력추적관리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 바. 제3호나목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 가.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나.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다.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 라.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 마. 생산자 : 생산자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 바. 이력추적관리번호 : 농산물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10] <개정 2001.10.8, 2002.7.22, 2006.1.25>

수수료(제46조제1항관련)

2. 우수농산물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인증 신청	1	50,000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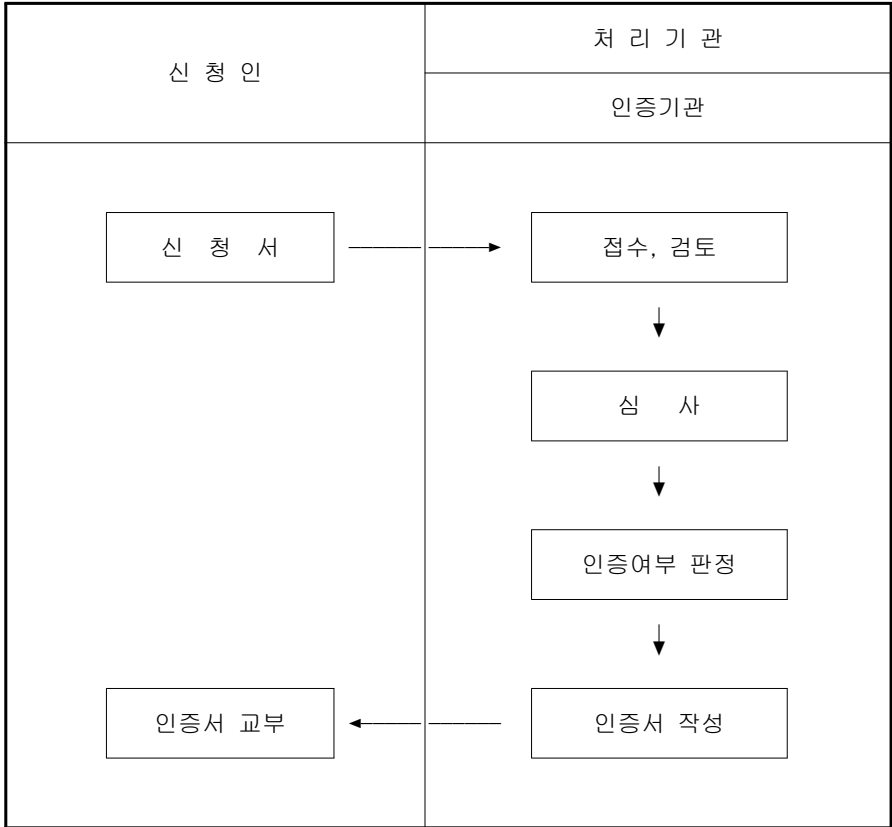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1	100,000

4.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우수농산물인증서

1. 인증번호 : 제 호
2. 생산자(조직명) : (농가수 : 명)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
5. 품목명 :
6. 재배면적(m²) :
7. 재배지역 :
8. 유효기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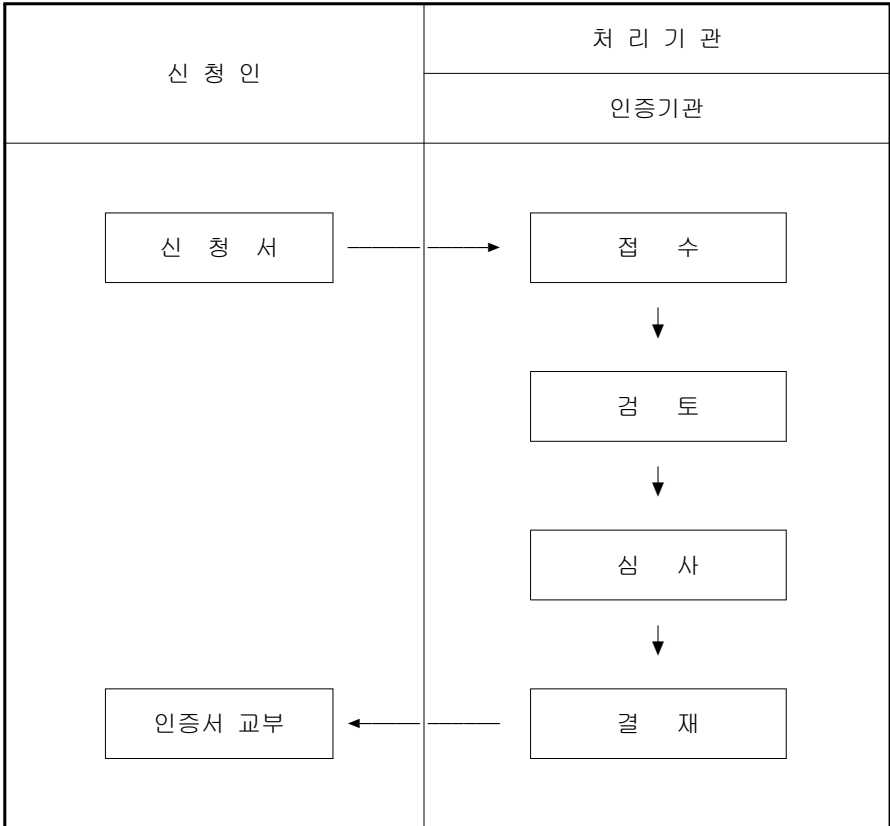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06.1.25, 2007.6.29>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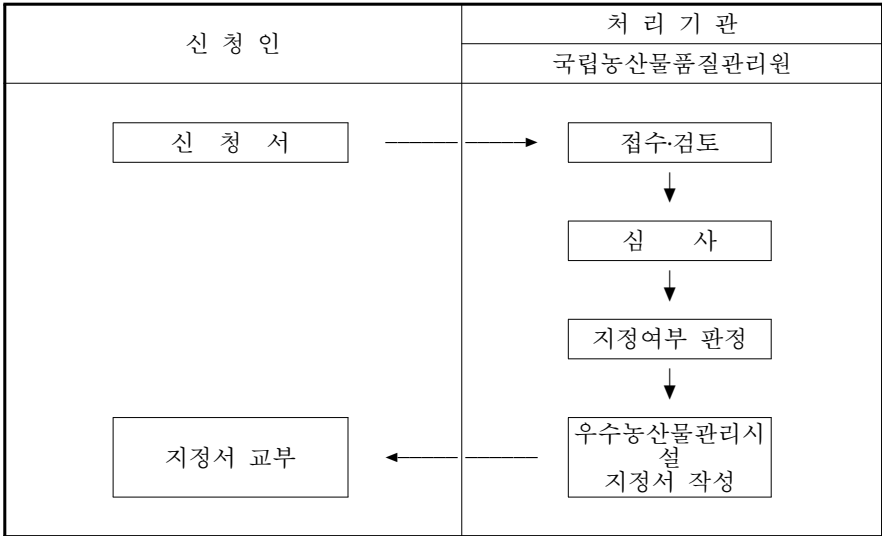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시설명		
	조직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법인등기부등본</p>	<p>수수료</p> <p>10만원 (수입 인지 뒤쪽 붙임)</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불입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0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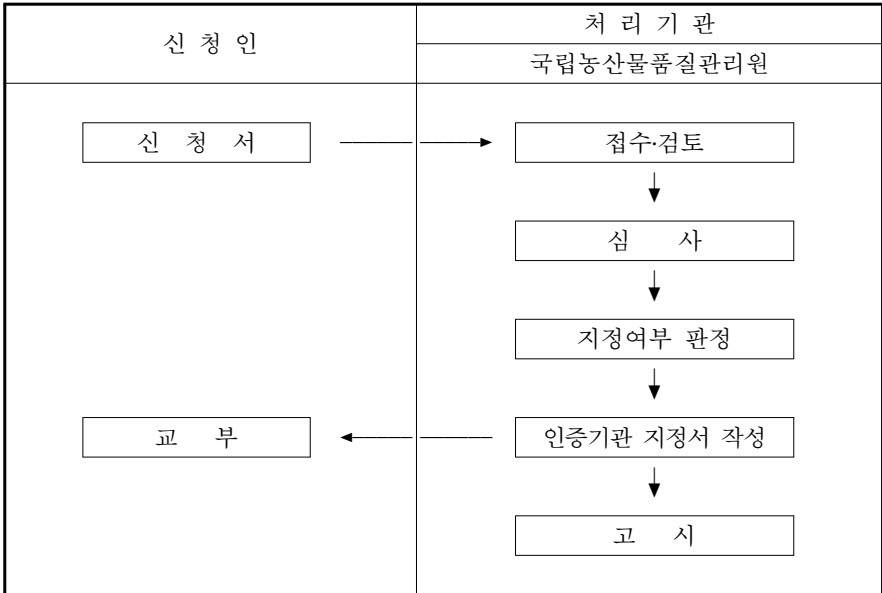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			
지정번호			
관리시설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의8서식] <개정 200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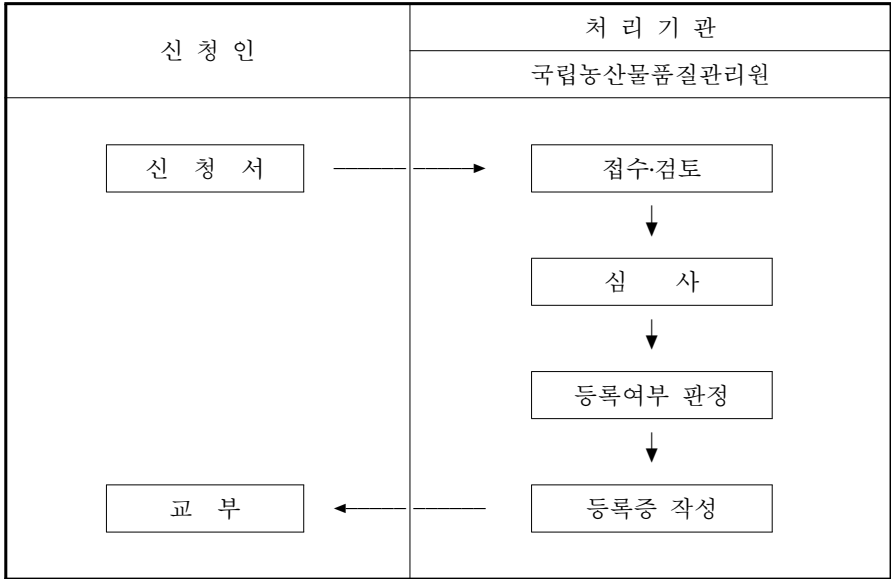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인증업무범위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 1. 등록번호 : 제 호
- 2. 신청자(조직명) : (농가수 : 명)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4. 주 소 :
- 5. 품목명 : 판매업소는 기재를 생략
- 6. 유효기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번호
	주 소		
변경내용	기존내용	변경된 내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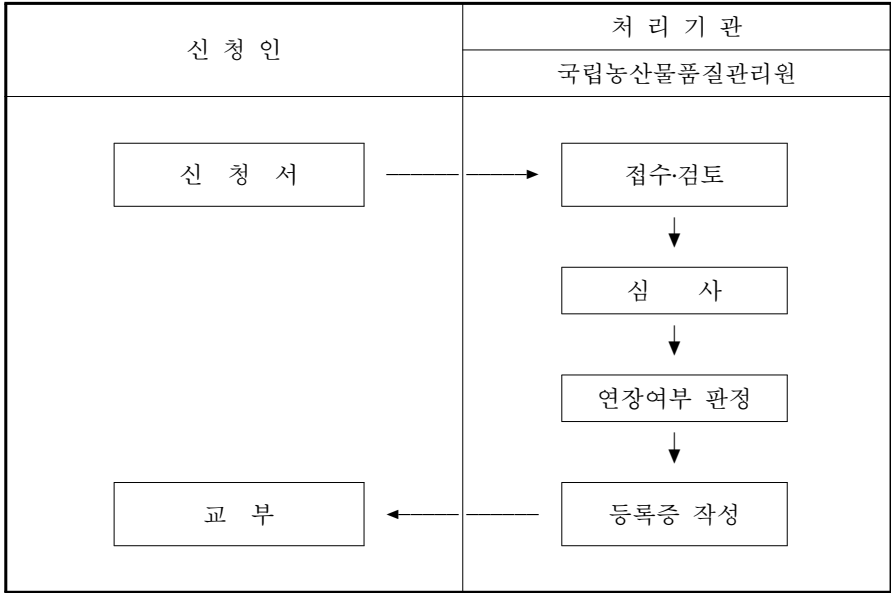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조직원 수	
	주 소		전화번호	
품 목(품종)				
등록번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p>「농산물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립농산물관리원장 귀하</p>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86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 30호 ; 2007. 4.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2008년 9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라 함은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자”라 함은 생산자가 이력추적관리품을 출하한 후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판매자”가 수령하기 전까지 이력추적관리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판매자”라 함은 이력추적관리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품이 수출농산물일 경우에는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제3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법 제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유통자·판매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6-5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는 폐지한다.

부 칙<2008.9.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86호>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1】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1. 공통 적용사항

- 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 마.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개별 적용사항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

(1) 생산정보

- ① 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 ② 재배지 소재지 및 면적
- ③ 품목
- ④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2) 출하정보

- ① 날짜
- ② 품목
- ③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명칭
- ④ 물량
- ⑤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나. 유통자

(1) 입고정보

- ① 날짜
- ② 생산자 성명
- ③ 품목
- ④ 물량

(2) 출고정보

- ① 날짜
- ② 품목
- ③ 판매처 명칭
- ④ 물량
- ⑤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 입고정보 및 출고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이력추적관리품의 입고·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매자

- ① 입고 날짜
- ② 구입처 명칭
- ③ 입고 품목
- ④ 입고 물량
- ⑤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3.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를 연결하여 「다목(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과 같이 부여한다.

- ① 연도번호는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한다.
 - ②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 한다.
- ※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등록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자리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①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 ② 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위험부담이 작아 질 수 있다.

다.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0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A APC의 대표자가 「홍길동 농가가 생산한 딸기 500kg」를 포장하여 2006년 12월 25일 B 마트로 출하하고, A APC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 「00012-0600001」임

- ※ A APC 대표자는 00001의 아래의 정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00001의 이력 : APC명(A APC), 생산자(홍길동), 출하날짜(2006년 12월 25일), 품목(딸기), 물량(500kg), 출하처(B마트)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구 분	작 물 명
105품목	
식량작물 (10)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특용작물 (4)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약용작물 (34)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조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취나물, 고사리
버섯 (10)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채소 (30)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 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깨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부추, 콩나물
과수·수실 (17)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호도, 잣, 무화과

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우수농산물시설지정을 위한 그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및 대상품목 등을 정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 2007-29호 ; 2007. 4.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2008년 9월 30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7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정하며,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이력추적관리등록”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 및 수확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 ②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

③ “이력추적관리등록”은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해당 농산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필수기준을 말하며, 생산자가 해당농산물에 대해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법 제7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로서 법 제7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며, 동 시설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5조(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6-6호(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는 폐지한다.

부 칙<2008.9.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85호>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구 분	작 물 명
105품목	
식량작물 (10)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특용작물 (4)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약용작물 (34)	구기자, 당귀, 맥문동, 울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롱(괭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취나물, 고사리
버섯 (10)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채소 (30)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 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깻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부추, 콩나물
과수·수실 (17)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호도, 잣, 무화과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호

우수농산물인증,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 2.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우수농산물인증,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증심사반”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
3. “인증기준”이라 함은 우수농산물인증의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2006-6호)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4.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농업인을 말한다.
5.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품을 조사하는 인증관리기관 소속 공무원과 인증기관 소속 인증품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서를 교부받은 시설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을 말한다.
8. “인증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3, 법 제7조의4,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설과 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 및 인증품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출장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2 장 인 증

제 1 절 인 증 신 청

-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신청자가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중 재배예정농지 지적도는 사·군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증농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②인증농업인이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영농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인증농업인이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한다.

제 2 절 인 증 심 사

- 제4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5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본심사방법과 규칙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서를 교부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별표2와 같다.

-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 생산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교부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 ④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교부장을 기록 관리한다.

제 3 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품목군별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 4 절 인증품 표시사항

- 제8조(표시사항)** ①인증농업인이 인증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은 규칙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 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는 일괄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 ②인증농업인이 인증품을 공동생산·공동출하 할 경우 생산자(작목반명)의 표시는 생산자단체명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 5 절 인 증 품 사 후 관 리

- 제9조(생산과정조사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한 때는 인증품 생산·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 ②인증기관이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한 생산 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이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과정조사요령은 별표4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반기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조사원은 생산과정조사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판품조사 등)** ①출장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판품조사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 ④조사원은 시판품조사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조사원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인증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은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과정에서 인증품에 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인증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 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한 결과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시설 지정관리

제 1 절 관리시설 지정신청

- 제13조(관리시설의 지정신청)** ①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지원장에게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관리시설 지정 심사

- 제14조(관리시설 지정심사 등)** ①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시설 지정심사원(이하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시설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관리시설지정심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③관리시설지정심사원은 규칙 제15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규칙의 별표3의3에서 규정하는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규정 중 바. 목”이 정하는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은 관리시설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제15조(심사결과와 통보 등) ①지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규칙 제15조의 5제2항의 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적합으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지정을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 지정서 교부를 하는 때에 부여하는 관리시설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5와 같다.

③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장 및 지정받은 관리시설을 관할하는 출장소장, 관계 인증기관의 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통보)한다. 다만, 원장에게는 익월 5일까지 보고한다.

제 3 절 관리시설 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등) ①출장소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시설 지정 기준 및 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출장소장은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관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의 조사결과를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출장소장은 관리시설이 규칙 제15조의6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일 경우에는 당해 관리시설을 지정한 지원장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⑥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장, 당해 출장소장 및 관계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제 4 장 인증기관 지정관리

제 1 절 인증기관 지정신청

- 제17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거나, 당해 기관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신청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인증기관 지정 심사

- 제18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인증기관 지정 심사원(이하 “인증기관지정심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인증기관지정심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의7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③인증기관지정심사원은 규칙 제15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규칙의 별표3의5에서 규정하는 “3. 인증업무규정 중 사. 목”이 정하는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15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6과 같다.

- 제19조(심사결과와 통보 등)** ①원장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심사결과보고서가 규칙 제15조의7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적합으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지정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②원장이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할 때 인증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순서별로 세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부여시 001)
- ③원장이 인증기관지정을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인증기관 사후관리

- 제20조(사후관리 등)**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인증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조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인증관리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규칙 제15조의8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5조의8제1항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우수농산물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4조)

1. 심사일반

- ① 심사반 편성 :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 ② 표본심사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생산자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조직원수(인)	100이하	11~30	31~60	61~100	101이상
심사대상(인)	3 이상	6 이상	9 이상	12 이상	10%(최저15호 이상)

- ③ 서류심사 :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 ④ 현지심사 :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한 재배포장, 생산시설 등을 조사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인증품생산계획서 등 첨부자료의 적정성, 과거 인증경력 및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⑤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증기관의 장은 영농규모가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신규인증 심사절차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다. 다만, 영농규모가 감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생략한다.

2.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 등

- ① 인증심사원은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 등에 대하여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은 연 1회 이상 생산물(이하 생육중인 작물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다.

③토양·용수의 시료채취 방법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한다.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발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의 흙을 각 2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한다.

라) 시료량은 분석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1kg)으로 한다.

2) 용수

가) 재배용수 또는 처리장에서 세척 등에 사용하는 용수조사는 수원별로 조사하되,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료량은 분석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2리터~4리터)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가) 토양과 용수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한다.

나)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분석기관으로 송부한다.

④ 토양·용수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부처 또는 공인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등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다만 생산물 등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은 법 제12조의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에 따른다.

3. 심사기준표

우수농산물인증심사기준표는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6호)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이다.

4. 심사결과 보고

인증심사원은 우수농산물인증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심사결과 판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토양·수질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적합으로 판정을 한다. 다만, 경미한 미비사항을 신청인이 일정 기한내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2]

우수농산물인증번호 부여방법(제5조)

1. 인증기관 지정번호(000) - 인증품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00)(00) - 시·군별 인증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구별 지정번호는 “00”으로 한다.
3.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서울특별시(01)		예) 서울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01-0100-0001
부산광역시(02)	기장(01)	
대구광역시(03)	달성(01)	
인천광역시(04)	강화(01), 옹진(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01)	
경기도 (10)	수원(01), 성남(02), 의정부(03), 안양(04), 부천(05), 광명(06), 동두천(07), 안산(08), 고양(09), 과천(10), 구리(11), 평택(12), 남양주(13), 오산(14), 시흥(15), 군포(16), 의왕(17), 하남(18), 파주(19), 이천(20), 용인(21), 양주(22), 여주(23), 화성(24), 광주(25), 연천(26), 포천(27), 가평(28), 양평(29), 안성(30), 김포(31)	예) 이천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1020-0001
강원도 (11)	춘천(01), 원주(02), 강릉(03), 동해(04), 태백(05), 속초(06), 삼척(07), 홍천(08), 횡성(09), 영월(10), 평창(11), 정선(12), 철원(13), 화천(14), 양구(15), 인제(16), 고성(17), 양양(18)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충청북도 (12)	청주(01), 충주(02), 제천(03), 청원(04), 보은(05), 옥천(06), 영동(07), 진천(08), 괴산(09), 음성(10), 단양(11), 증평(12)	
충청남도 (13)	천안(01), 공주(02), 보령(03), 아산(04), 서산(05), 논산(06), 금산(07), 연기(08), 부여(09), 서천(10), 청양(11), 홍성(12), 예산(13), 태안(14), 당진(15), 계룡(16)	
전라북도 (14)	전주(01), 군산(02), 익산(03), 정읍(04), 남원(05), 김제(06), 완주(07), 진안(08), 무주(09), 장수(10), 임실(11), 순창(12), 고창(13), 부안(14)	
전라남도 (15)	목포(01), 여수(02), 순천(03), 나주(04), 광양(05), 담양(06), 곡성(07), 구례(08), 고흥(09), 보성(10), 화순(11), 장흥(12), 강진(13), 해남(14), 영암(15), 무안(16), 함평(17), 영광(18), 장성(19), 완도(20), 진도(21), 신안(22)	
경상북도 (16)	포항(01), 경주(02), 김천(03), 안동(04), 구미(05), 영주(06), 영천(07), 상주(08), 문경(09), 경산(10), 군위(11), 의성(12), 청송(13), 영양(14), 영덕(15), 청도(16), 고령(17), 성주(18), 칠곡(19), 예천(20), 봉화(21), 울진(22), 울릉(23)	
경상남도 (17)	창원(01), 마산(02), 진주(03), 진해(04), 통영(05), 사천(06), 김해(07), 밀양(08), 거제(09), 양산(10), 의령(11), 함안(12), 창녕(13), 고성(14), 남해(15), 하동(16), 산청(17), 함양(18), 거창(19), 합천(20)	
제주도 (18)	제주(01), 서귀포(02), 북제주(03), 남제주(04)	

[별표3]

우수농산물인증 유효기간연장의 범위(제7조)

1. 일반 농산물 : 인증을 신청한 작물의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1년(건조 농산물은 2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삼류 : 인증을 신청한 인삼의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10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삼은 인삼의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1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3. 약용작물 : 인증을 신청한 작물의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5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4]

우수농산물관리인증품 생산과정 조사요령(제9조 관련)

1. 조사대상 농가

개인명의로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생산자 단체 명의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표1의 표본심사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조사항목

가.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나.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 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품의 피해 발생 유무
-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생산물, 작물체,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다. 수확 및 저장·보관단계

- 재배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라. 가공·포장 및 출하단계

-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마.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바.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별표5]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번호 부여방법(제15조)

1. 관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00)(00) - 지원별 관리시설 지정순위의 일련번호(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구별 지정번호는 “00”으로 한다.
3.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는 별표 2의 “3,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 표”와 같다.

[별표6]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18조)

1. 첨부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관한 사항(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됨)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 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전산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인증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인증기관의 조직, 인증업무관련 사업계획
- 기타 인증관련 문서·대장 등 증거서류에 관한 사항 등

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직제표 등 조직관련 증거서류
 - 인력에 관한 사항 : 심사원의 재직증명서 등 증거서류
-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개요, 자체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을 위한 업무협약서 등 증거서류
-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 인증심사위원회 구성기준
 - 심사원관리계획(교육, 준수사항, 임무 및 관리감독규정)
 - 인증업무 실시방법
 - 인증품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증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계획서

1.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계획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	비 고
	m ²	톤	

3.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품목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여부
7.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품목명	재배포장			생산 계획량	비 고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면적		
					m ²	톤	

[별지 제2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m ²		생산계획량	톤
	포장소재지				
인증번호					
변경내역					
변경사유					
<p>상기와 같이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50px;">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귀하</p>					
첨부 :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농장(포장)소재지						
	품목별	재배 면적(㎡)	생산기간	생산계획량(kg)			
2. 심사결과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제 실시				⑧수확 작업			
②종자 및 종묘의 선정				⑨수확 후 관리			
③재배전 토양관리				⑩수확 후 관리시설			
④농기구 관리				⑪쓰레기 및 유해물질 관리			
⑤비료 및 양분관리				⑫환경 문제			
⑥물관리				⑬교육			
⑦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⑭기타			
3. 심사의견							
불임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및 기타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교부대장

□ 시·군명 :

접수		신청자		처리 기한	인증 담당자	인증 일자	인증 번호	인증내역			비고
번호	일자	성명	주 소					품목	면적	생산량 (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시·군별, 종류별로 구분 작성한다.
2. 필지별은 000(지번)필지 외 00으로 기재
3. 인증서 원본을 비고란에 간인하여 교부

[별지 제5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과정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시 및 장소 :					
2. 인증농가					
성 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생산·출하 내역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출 하 량		
			당일출하량(단량)	누 계	
	ha	톤		톤	
4. 조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제 실시			⑧수확 작업		
②종자 및 종묘의 선정			⑨수확 후 관리		
③재배전 토양관리			⑩수확 후 관리시설		
④농기구 관리			⑪쓰레기 및 유해물질 관리		
⑤비료 및 양분관리			⑫환경 문제		
⑥물관리			⑬교육		
⑦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⑭기타		
5. 종합의견					
첨부 :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점검표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품 시판품조사결과 보고서

조사 월일	조사 장소	인증 번호	품목	단량	수량	생 산 자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상자 (대)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조사거부방해기피증거서류

품 목		수거일시		수거장소	
생산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조사단계 구분	생산·출하·저장 단계	재 배 면 적	㎡	생산량 (예상량)	톤
		출하량	톤	저장량	톤
내 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우수농산물인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NO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귀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시판품조사시

- 시판품조사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 기타 00하여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시판품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00출장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	소속	년 월 일	직급
성명			서명(또는 날인)

-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우수농산물인증품 조사결과통보서

조사기관 명

받는곳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 200

참 조 :

제 목 : 우수농산물인증품 위반사항 통보

귀 소속 농가의 우수농산물인증품(품목명)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 일시 : 200 00:00
2. 장 소 :
3. 생산농가
○ 주 소 :
- 성 명 :
4. 품목 및 판매(재고)수량
5. 위반내용 :
6.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조사기관의 장

210mm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법인(조직)명		조직원수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적 합	부적합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시설의 적정성		
④ 업무규정 적정성		
⑤ 기 타		

3. 심사의견

붙임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 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	법인(조직)명		조 직 원 수	
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적 합	부적합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시설의 적정성				
④ 인증업무규정 적정성				
⑤ 기 타				
3. 심사의견				
불임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기준 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4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 2.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라 함은 규칙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반”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9제6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자”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9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5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업무 및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출장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력추적관리품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 2 장 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등록자가 규칙 제15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변경신고서는 등록증을 교부한 출장소장에게 제출한다.

③신청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이하 “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가 2개소 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자의 주 생산·유통·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출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출장소장은 타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등록심사

제4조(등록기준) 규칙 제15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심사) ①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출장소장은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 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반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를 할 때에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검토·현지방문 등을 하여 규칙 제15조의9제3항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의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제6조의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5조의9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본심사 방법과 규칙 제15조의9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출장소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심사 결과 등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후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 9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할 때 부여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원장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다섯 자리로 한다.

제 4 장 등록 유효기간 연장

- 제8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출장소장은 규칙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규칙 제15조의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의9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 ③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종전 등록번호로 한다.

- 제9조(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15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 5 장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표시사항

- 제10조(표시사항)** ①등록자가 관리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15조의 13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 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는 일괄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 ②등록자가 공동생산·공동출하 할 경우 생산자의 표시는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 6 장 등록 사후관리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등록자가 관리품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2조(생산·유통과정조사 등) ①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관리품 생산·유통과정에서 제4조의 등록기준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고시 제2006-5호) 중 별표1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유통과정조사횟수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기간 중에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과정조사) ①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중인 관리품을 대상으로 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과정조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과정조사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3.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관리품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4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조사원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품에 대하여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등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관리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조사) 출장소장은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관리품에 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 조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 도농업기술원 및 사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부처 또는 공인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 조치) ①조사원이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출장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산물을 조사한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생산자'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 나. '유통자'라 함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단계부터 '다'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자'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다. '판매자'라 함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2.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가. 공통사항

- (1) 관리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2)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3) 농약 등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개별사항

(1) 생산자

- (가) 농산물 생산·출하정보를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 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하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재 생략할 수 있다.
- (나) 생산단계에서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정보 : 생산자, 품목, 재배지·면적,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 ②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 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2) 유통자

(가) 농산물 입고·출고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통단계에서 입고·출고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②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3) 판매자

농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리품의 구분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생산·유통·판매시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관리품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폐기, 용도변경 등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체계구축

당해 농산물의 유통경로의 생산·유통·판매자 모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2]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심사 세부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1. 심사방법

가. 심사대상

출장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9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의 생산여간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조직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 할 수 있다.

규모별(호)	10이하	11~30	31~60	61~100	101이상
대상자수	3호 이상	6 이상	9 이상	12 이상	10%(최저15호 이상)

나. 세부 심사사항 및 심사 시 고려사항

(1)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 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및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첨부여부를 심사

(2)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 포장재 필수기록사항 : 농산물 포장재 등에 관리품 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추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
- 단계별 정보기록·관리내용 확인가능성 : 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내용의 제공 및 확인의 가능성 여부를 심사
- 구분관리 정도 : 선별·저장·유통 등 각 단계별로 관리품과 아닌 것과의 구분 관리 가능성 여부를 심사
- 관리품 생산, 유통, 판매 능력의 적합성 : 생산량, 선별·선과·저장 등의 유통 관리 및 판매량 등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적정 시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심사

(3)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 단계별 추적가능 체계 :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 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제공 가능성 여부를 심사. 다만,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단계별로 관리품이 안전성 등의 유해성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되어 리콜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여부를 심사

(4) 생산·유통입고기록의 적합성 여부

- 농산물재배내역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
- 농산물 입·출고내역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판매자는 거래 명세서 보관여부 등)
- 생산(입고)·출하(판매)정보 필수사항 기록 여부 심사
 - ① 생산자의 경우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 생산정보 : 생산자, 재배자면적, 품목,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 ② 유통단계에서 입고·출고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 ③ 판매단계에서 입고정보 필수 관리사항 적정성 심사
 - 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5) 기타사항 : [별표1]의 등록기준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고시(농림부고시 제2006-5호)의 [별표1]의 관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를 한다.

2. 심사결과 보고

심사원은 등록심사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판정

가. 출장소장은 심사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규칙 제15조의9 및 제4조의 등록기준에 대한 등록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나.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제9조 관련)

1. 일반농산물 : 등록을 신청한 작물의 재배기간에 유효기간 1년(건조농산물은 2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삼류 : 등록을 신청한 인삼의 재배기간에 유효기간 10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삼은 인삼의 재배기간에 유효기간 1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3. 약용작물 : 등록을 신청한 작물의 재배기간에 유효기간 5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산단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결과 보고서					
①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관리품 생산계획					
단계별	품목명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계획량 (톤)	출하시기 (출하월)
생산단계					
③관리품 주요 출하처					
품 목 명	출하 시·군		업 체 명	수 량	
				톤	
④이력추적관리방법 : 종이문서, 바코드, RFID 등					
⑤심사의견 :					
불임 등록 세부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②관리품 생산계획				
단계별	품목명	재배면적 (ha)	생산계획량 (톤)	출하시기(월별)
생산단계				
③관리품 주요 출하처				
품목명	출하시·군	업체명	수 량	톤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 ① 등록신청서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나. 단계별 등록·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	비 고
①재배기록장 비치, 기재		
②출하내역장 비치, 기재		
③포장재 필수기록사항		
④생산·출하정보 기록관리		
⑤추적가능 체계		
⑥정보기록·관리상황 제공 및 확인가능성		
⑦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⑧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계		
⑨관리품 생산, 유통, 판매 능력		
⑩기타 이력추적관리 체계		

※ 생산·유통입고 정보의 적합성 여부는 영농개시중인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관리품 매입계획						
단계별	주요 품목명	원료매입 예정지	원료매입 계획량(톤)	제품생산 계획량(톤)	출하시기 (출하월)	
유통단계						
③관리품 주요출하 예정지						
주요 품목명		출하시·군	업체명		수 량	톤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① 등록신청서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나.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	비 고
①입고기록장 비치, 기재		
②출고내역장 비치, 기재		
③포장재 필수기록사항		
④생산·출하정보 기록관리		
⑤추적가능 체계		
⑥정보기록관리 및 확인가능성		
⑦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⑧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계		
⑨이력추적관리품 생산, 유통, 판매 능력		
⑩기타 이력추적관리 체계		

※ 입고·출고기록의 적합성 여부는 작업개시중인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판매단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심사결과 보고서				
①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관리품 매입계획				
단 계 별	주 요 품 목 명	비 고		
판매단계				
③심사의견 :				
붙임 등록 세부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심사표

1. 심사대상자 현황

① 신청인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관리품 매입계획				
단계별	주요 품목명	비 고		
판매단계				

2. 항목별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① 등록신청서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나.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용 및 판정결과(○, ×)		비 고
①매입내역 비치 및 관리여부			
②추적가능 체계			
③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④유해성 등 문제발생시 사후관리 체계			
⑤기타			

3. 기타

[별지 제2호서식]

이력추적관리품 생산, 출하, 판매 기록사항(예시)

1. 생산자 기록사항

가. 농산물재배 기록장

농 산 물 재 배 기 록 장					
생산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작성 책임자					
농산물재배지					
품목 및 품종	식부(재배)면적			평	
비 료 사용내역	월일	비 료 명	사용량	사용면적	사용목적 또는 이유
				평	
농 약 사용내역 (제조재 포함)	월일	농 약 명	사용량	사용면적	사용목적 또는 이유
				평	
기 타 작업내용	월일	작 업 명		사용면적	작업목적 또는 이유
				평	

※ 상기 서식은 생산자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서류입니다(우수농산물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는 해당 인증관련 영농일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료 사용량은 'kg'으로 표기하며, 농약 사용량은 유제 등 액체의 경우는 'ml'로, 입제, 수화제, 분제 등 액체외의 경우는 'g'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

생산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작성책임자			

일자별 (연월일)	품목명	품종명	판매처	규격	단위	수량	관리 번호	작업내용	비 고

- ※ 1. 규격 :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15kg", "20kg"등으로 기록, 수박 등 비포장 농산물은 기록 생략
- 2. 단위 : "상자", "망", "개", "통", "포"등으로 기록
- 3. 관리번호 :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

2. APC·RPC 등 유통자 기록사항

가.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장

유통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작성책임자			

일자별 (연월일)	구 입 처	품목명	품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 ※ 1. 규격 :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15kg", "20kg"등으로 기록, 수박 등 비포장 농산물은 기록 생략
- 2. 단위 : "상자", "망", "개", "통", "포"등으로 기록
- 3. 비고 : 출고정보기록장의 관리번호 등을 기록

나.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장

유통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작성 책임자			

일자별 (연월일)	품목명	품종명	판 매 처	규격	단위	수량	관리 번호	작업내용	비고

- ※ 1. 규격 :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15kg", "20kg"등으로 기록, 수박 등 비포장 농산물은 기록 생략
 2. 단위 : "상자", "망", "개", "통", "포"등으로 기록
 3. 관리번호 :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농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

3. 판매자 입고정보 기록사항

판매자(업소명)		등록번호	
주 소			
작성 책임자			

일자별 (연월일)	구 입 처	품목명	품종명	규격	단위	수량	관리번호

- ※ 1. 규격 : 상자 등 포장하는 경우 포장단위 "15kg", "20kg"등으로 기록, 수박 등 비포장 농산물은 기록 생략
- 2. 단위 : "상자", "망", "개", "통", "포"등으로 기록
- 3. 관리번호 : 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농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조사단계 구분	생산·유통·판매 단계	품목			
		품목		수량	
위반내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대상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NO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귀하는 농산물관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이 실시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조사시

- 조사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 기타 00하여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또는 날인)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시 및 장소 :				
2. 등록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생산·출하 내역(생산·유통단계만 기재)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출하량	
			당일출하량(단량)	누계
	ha	톤		톤
4. 조사결과				
구분	항목	조사결과		
생산단계	<input type="checkbox"/> 재배기록장 비치, 기록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생산, 출고정보 기록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유통단계	<input type="checkbox"/> 입고, 출고정보 기록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포장재 표시사항			
판매단계	<input type="checkbox"/> 판매내역관리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5. 종합의견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조사결과 통보서

받는곳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 200

참 조 :

제 목 : 관리품 조사결과 위반사항 통보

관리품의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조사일시 : 200 00:00
- 2. 장 소 :
- 3. 등록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4. 관리번호 :
- 5. 품목 및 판매(재고)수량
- 6. 위반내용 :
- 7.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 - 2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농 촌 진 흥 청 장

우 수 농 산 물 관 리 기 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관리인증품을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제3조 (관리기준의 구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농산물관리기준)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우수농산물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1.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7-30호) 별표1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3.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재배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및 묘목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약용작물의 경우 종, 아종, 변종 및 품종 등 식물기원이 검증된 종·묘로서 생약명, 식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종과 대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3. 재배전 토양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4.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1의 규정에 따라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도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p>5. 화약농약 등 화학적 약제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내역과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한다.</p> <p>◦ 기록사항 : 약제명이나 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p>
권장 기준	<p>3. 비료성분에 의한 토양오염예방을 위하여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최적재배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의 입단화, 미생물 양을 증가시켜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을 실천하여야 한다.
	<p>4. 농경지내 위해요소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원이 유입될 경우에는 폐수유입 및 폐기물 투입여부 등 오염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p> <p>◦ 토양 및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배지역 주변의 오염내력을 기록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p>
	<p>5. 토양소독 및 병해충 관리는 화학적 약제처리를 하기 전에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수경재배 등 경종적 관리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p>

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6.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을 말함 ◦ 생활하수 <u>오니</u>로 만든 자재, 미숙 퇴비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규제 기준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p>7.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8. 비료 사용량은 작물재배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처방서가 발급되지 않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시비처방에 의한다.
	<p>9. 비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토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p>6.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7.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5. 물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10. 인증대상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계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1의 규정에 의거 최근 4년 이내의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p>※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p>※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p>
권장 기준	<p>8. 작물별 적정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요구도, 토양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기 적정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9.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물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 기록·관리 사항 : 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개량 등</p>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구분	세부기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필수 기준	<p>11.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저항성 품종 선택, 경종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화학 농약은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약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p>12.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사항 : 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 횟수 등 <p>13.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한 장비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관리하여야 한다.</p> <p>14.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시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후에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p> <p>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권장 기준	<p>10.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준에 적합한 친환경농자재는 사용할 수 있다.</p> <p>11.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구분	세부기준
<잔류농약 분석 등>	
필수 기준	<p>16. 인증대상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2의 규정에 의거 수확 전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를 재배작물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품목 중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농산물안전성조사절차”에 의하여 대상 농산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 단, 농약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중에 해당작물에 사용 또는 주변 포장에서 비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잔류 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권장 기준	12.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 및 관리>	
필수 기준	<p>17. 농약의 보관장소는 성분변화, 결빙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식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의 보관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아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유효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하게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18. 살포 후의 빈 농약용기, 봉지 및 잔액은 주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량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기준
권장 기준	1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5.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사용 후의 남은 농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농기구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19. 모든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7. 농기구 보관 창고는 쥐·새 등의 유해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0.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에 의한 작물피해가 있거나 식물체가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한다.
	21. 수확한 농산물은 이물질 혼입 및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22. 수확후에 사용하는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농약사용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농약 이외의 약제사용은 제조회사가 규정한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에 의한다. ◦ 수확후 약제 처리시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p>※ 기록사항 : 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p>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3. 우수농산물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며, 관계 법령에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권장 기준	1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확후 관리시설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4.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표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5.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9.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구분	세부기준
권장 기준	20.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21.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구급상자 및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2. 모든 작업자는 급여, 작업자의 연령, 근무시간, 작업환경, 고용보장, 연금, 다른 법적 요구사항, 건강상의 필수 조건 등 근무 고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장소와 비료·농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해 해충과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4. 작업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 및 쓰레기 처리 장소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2. 환경 문제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6.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관리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25. 인증농업인은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 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3. 교육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27.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7조의2 ①항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우수농산물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업인은 비료·농약안전사용, 농작업 장비·농작업자 안전수칙 및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인증농업인은 공동 작업자가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p>

7.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리기준의 분석성적서 인정기관 지정 및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우수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2006-3) 제4조 별표1의 2의④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세부실시요령(농관원고시 2006-4) 제15조(안전성조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석기관의 지정 및 업무처리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구분) 농관원장은 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분석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토양(토양오염우려기준)
2. 용수(수질기준)
3. 농산물(잔류농약), 단 중금속은 1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 미생물

제3조(인정기관의 구비요건) GAP인증 및 관리기관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조사시설 면적, 설비, 기계·기구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조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정기관 지정신청)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인정기관 구비요건 내역을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문서로 인정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능력평가) ① 농관원장은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전에 구비요건으로 분석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인 또는 지정 받은 기관은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경우 분석능력 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분석능력평가 결과 신뢰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인정기관 지정) 농관원장은 농산물안전성조사 인정기관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제7조(분석성적서의 인정범위) 해당 GAP인증 관리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제2조에 따라 지정한 항목의 분석성적서에 한한다.

제8조(인정기관의 임무) ①농관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분석시험법에 따라 실시하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시험법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정도관리 등 분석능력평가에 응해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분석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분석대장 및 결과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적합 판정된 시료는 7일, 부적합 판정된 시료는 30일간 분석성분 변화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수질은 제외)

⑤ 이 지침에 따른 기관 인정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처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인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의 위반에 대한 처분) 농관원장은 인정기관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별표1]

분석시설 및 인력 기준

1. 분석실의 면적

- 일반실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250㎡ 이상이며, 특정 항목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분석(동정)기구 기준

가. 토양(토양오염우려기준)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건조기
- 회화로
- 진탕기(항온유지 가능)
- UV-VIS 분광광도계
-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 기타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장비

나. 용수(수질 기준)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건조기
- pH미터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이온크로마토그래프(IC)
- UV-VIS 분광광도계
- 자흡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 기타 수질분석에 필요한 기본장비

다. 농산물(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건조기
- pH미터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기타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장비

라. 미생물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최저온도 30℃±1)
- 미생물동정기
- 기타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3. 분석원의 기준

가. 분석원의 자격

- 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②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③ 자체분석기관에서 특정 규격.기준만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석분야에서 1년이상 분석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나. 분석원의 수 :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명 이상

[별표 2]

1. 위반내용

- 분석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 분석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분석업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석을 한때

2. 처분기준

위반내용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분석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가. 실험하지 않고 발급 1) 분석항목 전항목 2) 분석항목 50%이상 3) 분석항목 50%미만 나.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적·부를 바꾸어 발급 1) 분석항목 전항목 2) 분석항목 50%이상 3) 분석항목 50%미만	분석업무정지 1월 분석업무정지 15일 분석업무정지 7일	분석업무정지 2월 분석업무정지 1월 분석업무정지 15일	분석업무정지 3월 분석업무정지 2월 분석업무정지 1월
2.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록물을 포함한 분석기록서를 미작성·미보관 또는 허위 기재한 때	분석업무정지 15일	분석업무정지 1월	분석업무정지 2월
3. 분석업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석을 한때 가. 지정받은 분석업무에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나. 분석능력관리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때 다. 정해진 시험방법·절차를 위반한 때 ① 2개이상의 검체를 혼합하여 시험한 때 ② 적부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③ 적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시정 시정 분석업무정지 7일	분석업무정지 7일 시정 분석업무정지 15일 분석업무정지 15일 분석업무정지 7일	분석업무정지 15일 분석업무정지 7일 분석업무정지 1월 분석업무정지 1월 분석업무정지 15일
4. 분석업무 정지기간중 분석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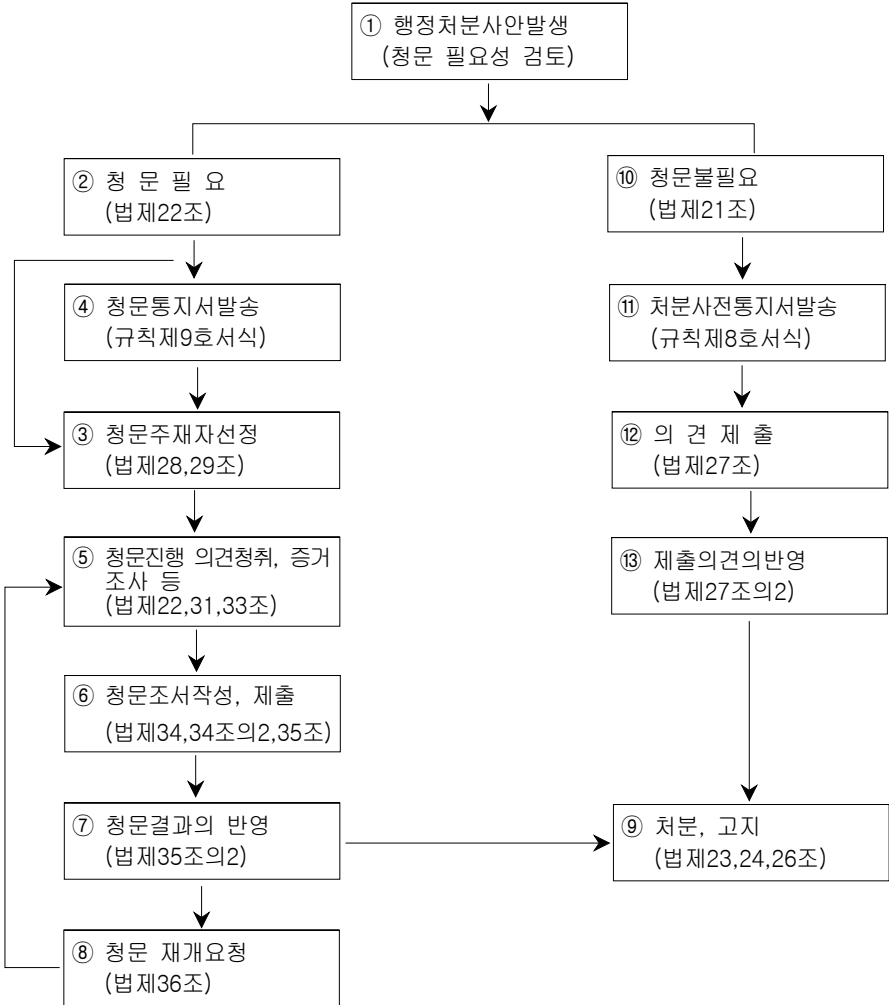
3.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 분석업무의 정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분석업무정지기간의 1/2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4차위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 취소한다.

다. 분석과 관련한 위반내용이 분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8. 행정처분절차도



※ 법은 행정절차법, 규칙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행정처분 절차설명 붙임 참조)

< 행정처분 절차 설명 >

① 행정처분 사안 발생, 청문실시 여부 검토

○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사항(농산물품질관리법 제33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제4항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취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4제3항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 기타 행정처분청이 청문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할 사항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② 청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문 주재자를 선정, 청문통지서를 발송 준비

③ 행정청은 청문주재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격자를 선정

④ 청문통지서는 행정절차법 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 당사자에게 발송

⑤ 청문을 진행함에 있어, 청문주재자의 청문사유설명, 당사자 의견진술(제출) 증거제출, 기회제공, 참고인·감정인 질문

- ⑥ 청문을 종결한 후 규칙의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
- ⑦ 행정청의 청문조서를 검토한 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
- ⑧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문재개를 명할 수 있음
- ⑨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하되 처분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행정청은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 ⑩ 청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고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준비
- ⑪ 처분사전통지서는 규칙의 별제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당사자에게 발송
- ⑫ 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 ⑬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의견이 있다고 할 경우 반영

9. 인증기관 현황표

기관명	인증대상품목	주 소	전화 번호
농협중앙회	식량(쌀, 감자), 과수, 채소, 버섯, 약용(인삼)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02-2080-6264
(사)한국생약협회	약용작물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02-967-8133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전품목(수출농산물에 한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02-6300-1433
한경대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경기 안성시 석정동 67	031-670-5451
글로벌유농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492-4	053-326-9895
유진텍(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	042-863-2052
중부대 산학협력단	인삼, 갯잎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041-750-6313
조선대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7449
단국대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번지	041-550-3616
한국인삼공사	홍삼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6	042-600-0393
(주)스페이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광주 북구 오룡동 1	062-971-5085
강원대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 253번지	033-570-6764
롯데쇼핑㈜롯데마트	63개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품목 중 특용/약용작물 제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02-411-8624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45-15	063-532-8885
(주)신세계 이마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0-1	02-380-5525
(주)한국환경농업	67개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품목 중 약용작물 제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70-1	031-798-0067
(주)삼성테스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02-3459-8724
전남대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062-530-2034
농업회사법인 통통	5개품목(감귤,감자,녹색꽃양배추,양배추,마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780	064-792-3488

기관명	인증대상품목	주 소	전화번호
(주)동부하이텍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전품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02-3484-1500
(주)팜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충남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	041-733-3635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 220	042-821-6709
남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584-11	062-655-0754
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약산업센터	9개품목(도라지, 당귀, 독활, 사삼, 오갈피, 오미자, 작약, 천궁, 황기)	충북 제천시 왕암동 932번지	043-648-7200
(주)판코리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 458-7	042-824-6734
(주)코리아아그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302-3	043-544-5800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전품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5로 152	051-860-3445
삼성에버랜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3-3	031-288-0747
광주여자대학교친환경인증사업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65	062-951-3974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	고구마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585	061-533-5577
팜울(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감곡리 1213-5	055-763-3461
(주)ISC농업발전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전북 익산시 목천동 916-4	063-856-0907
산림조합중앙회	농림부 고시 제2007-29호에서 규정한 18품목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 (삼전동 111-5)	02-3434-7184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061-450-2994
사단법인 한국온실작물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542-5	061-381-3643
농업회사법인(주)성농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063-545-0422
(주)친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1가 1113-3	063-247-756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개신동 12)	043-261-3432
(주)경농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품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4	02-3488-5800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매뉴얼

인 쇄 : 2008년 12월

발 행 : 2008년 12월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편 집 : 식품산업정책단 소비안전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 02)500-1999

인쇄처 : 한라인쇄 02)503-3011
